

197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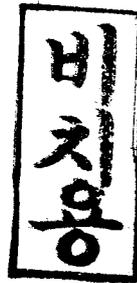
광공업센서스

조사요령서

통제청도서실



B0006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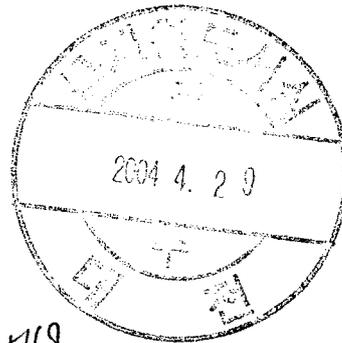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제10.111
78747
(973)

1973년

광공업센서스

조사요령서



B6549

— 목 차 —

I. 조사개요	3
1. 조사 목적	5
2. 조사의 법적 근거	5
3. 조사 연혁	6
4. 조사 체계	7
5. 조사 시기	7
6. 조사 범위	8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11
8. 조사 단위	12
9. 조사 사항	13
10. 조사표 종류	15
11. 조사 방법	16
12. 집계 및 공표	16
II. 조사원의 임무	17
1. 조사업무의 순서	19
2. 조사용품의 수령	19
3. 사전조사	20
4. 실 사	21
5. 실사진도 보고	24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25
7. 기 타	26
III. 조사표 기입요령	27
1. 일반적 유의사항	29

2. 항목별 기입요령	30
가. 조사표Ⅰ (5인이상 사업체용)의 기입요령	30
나. 조사표Ⅱ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요령	57
다. 조사표Ⅲ (4인이하 영세사업체용)의 기입요령	63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73
1. 항목별 검토 정리 요령	75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77
부록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표	95
부록2.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연관표	113
부록3. 도량형 단위 환산표	145
부록4. 조사표류	149

I.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광공업 센서스는 주로 광공업부문의 산업구조 및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 (1) 산업별·지역별 생산액 및 부가가치의 구성
- (2)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임금수준 파악
- (3) 주요 품목별 제품 및 원재료의 기초통계 작성과
- (4) 국민소득 추계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본 센서스는 광업, 채석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한 경제계획의 수립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한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측정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생산구조 및 수준의 국제간 비교자료로 이용되고 도매물가지수 및 임금지수 등 각종 주요지수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도 이용된다.

2. 조사의 법적 근거

본 센서스는 통계법(법률 제980호)에 의하여 지정통계 6호로 지정된 통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체에서는 본 조사에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센서스에서 얻어진 통계자료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조사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漏洩)하거나 도용(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만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법 제 11 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규정, 제 21 조: 벌칙 규정)

< 통계법 (조) >

제 2 조 (정의) 본법에서 지정통계라 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통계 또는 기타의 기관에 귀입하여 작성하는 통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통계를 말한다.

제 5 조 (신고의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의 장은 지정통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에 대하여 통계자료의 신고를 명할 수 있다.

제 20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懲役)이나 5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
2.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제 10 조 (비밀보호) 통계조사의 결과 알려진 개인, 법인, 기타의 단체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한다.

3. 조사 연혁 (沿革)

광공업 센서스 (지정통계 제 6 호)

1 회	1955 년	한국은행	주관
2 회	1958 년	한국 산업은행	주관
3 회	1960 년	상공부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④ 4 회	1963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5 회	1966 년	//	//

6 회 1968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7 회 1973 년 경제기획원 주관

광공업 통계조사 (지정통계 제 17 호)

1 회 1967 년 경제기획원 한국산업은행 공동주관

2 회 1969 년 경제기획원 주관

3 회 1970 년 "

4 회 1971 년 "

5 회 1972 년 "

4. 조사 체계

가. 경제기획원장관→시장 및 도지사→지도원→조사원→대상사업체

나. 지도원

지도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지도원은 조사표류의 배부, 수집, 확인 등의 사무에 종사하며 관할 조사원을 지도 감독한다.

다. 조사원

조사원은 시장 및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임명하고, 관할 조사구의 조사업무에 종사한다.

5. 조사 시기

가. 조사기준일 : 1973.12.31 일 현재

나. 조사대상기간 : 1973.1.1 ~ 12.31 까지 (1개년간)

다. 조사실시기간 : 1974.4.1 ~ 4.30 일까지 (1개월간)

6. 조사의 범위 (範圍)

이 조사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대분류 「 2 」에 해당하는 「 광업 및 채석업 」과 대분류 「 3 」에 해당하는 「 제조업 」이다.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참조)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 (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 (석탄가스), 액체 (원유), 고체 (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설풍 (碎鈹), 세척 (洗滌), 체질, 선광 (選鈹),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던, 타 사업자가 하던 간에 포함된다.

단,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기타 광물제품 제조업 (3699)에 포함된다.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 지던, 집에서 행하여 지던 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한다.

(1) 제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가) 농림수산업 (農林水產業)과의 관계

- ① 농가, 어가 (漁家) 등에서 자가 채취 또는 재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유급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으로 한다.

- ② 어선(漁船)내에서 행하는 어류 및 해산물 식품의 가공 또는 제조는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제재기계(製材機械) 또는 기구로서 각재(角材) 또는 판재(板材)를 제조하는 사업은 그 장소가 임야이건 아니건 제조업에 포함하나 벌목업(伐木業)과 벌목현장에서 세지(細枝)를 절단하여 원목을 만드는 목재 절단업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나) 건설업(建設業)과의 관계

제조된 부분품을 조성 또는 조립(組立)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나 조립식 부분품, 완전부분품을 토지에 정착하여 교량, 물탱크, 보관 및 창고시설,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수도관, 살수기, 통풍장치 및 에어컨더슨, 전등 및 전선 등으로 조립하는 활동과 빌딩의 시설, 건축의 모든 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다) 도, 소매업과의 관계

- ①接客시설을 갖추어 놓고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빵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는 음식업에 분류되나 식빵, 케이크 및 기타 부패성 있는 빵제품 제조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에 포함된다.

그러나接客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주로 소, 도매업자 또는 행사인에게 빵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본다.

- ②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의 경우 개인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제조를 주로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③ 농림, 수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선별(選別), 포장(包裝)만을

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보장 '않는다.

- ④ 스스로는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업자(下請業者)에게 지급하여 제조하고 이익을 자기 명의로 도매하는 도매업자는 제조업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임가공업(賃加工業)과의 관계

타 기업의 소유에 속하는 원재료에 가공 처리를 하고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산업(제조업과 제조업간)의 수탁제조는 임가공료만 조사하고 타산업(他産業)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생산비, 출하액 등을 전부 조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바) 수리업(修理業) 또는 서어비스업과의 관계

- ① 주요 가정용구(스토브 및 요리용 난로, 범상공세탁기, 건조기)의 설비, 가구장치, 자동차, 자전거 및 기타 소비자 상품을 수선하는 사업체는 수선되는 상품의 종류에 관련된 수선서비스업(951)에 분류되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따라서 개개의 가정 소비자(家庭消費者)로부터 직접 위탁을 받아 표백, 염색, 정리(整理)하는 경우(세탁소, 염색소)는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삐) 출판, 발행업과의 관계

신문사나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 출

관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그러나 신문사의 지국과 같이 주로 뉴스의 공급만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 보조업종과의 관계

자가 발전소, 연구실, 창고, 부속병원, 직영식당 등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부수되어 보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된 산업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7. 조사대상 사업체의 결정

조사대상 사업체는 전수조사 사업체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와 표본조사 사업체 (종업원 4인이하 영세 사업체)로 구분한다.

가. 전수조사 사업체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의 결정

1973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실재(實在)하는 사업체로서,

1) 1973년 12월 31일 현재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2) 1973년 1년중 또는 12월중 조업일(操業日)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체

3) 1973년 12월말 현재 휴업중(休業中)이라도

가) 1973년 중의 조업일수가 90일 이상이고,

나) 조업기간(操業期間) 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이었던 사업체 (예: 제빙업 사업체)

4) 제염사업체(製鹽事業體)는 조업일수가 90일 미만(未滿)이라 하

더라도 조업 기간중의 평균 종업원수가 5명이상인 사업체,

단, 정제염(精製鹽)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통상적인 제조업으로

보아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0일 미만을 조업한 사업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5)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군(軍)이 직영하는 사업체

나) 공공 직업보도소 및 교도소의 작업소

예: 갱생원, 재활인원(再活人院)

다) 공공단체 및 학교에 속해있는 실습장, 시험소, 연구소

예: 학교 실습장

나. 표본조사 사업체(종업원 4인 이하 영세사업체)의 결정

1)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사업체 조사에서는 1973년 10월 1일 현재로 실시된 상주인구조사에서 작성된 광공업 영세 사업체 명부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지역」이 추출되었다.

2) 영세사업체의 결정은 제 6 항 조사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정의에 따라서 종업원 5인 이상의 전수조사 사업체와 동일한 요령으로 결정 하되 추출된 표본지역내에 실재하는 4인 이하의 광공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조사대상 사업체를 결정하는 방법은 모집단 명부로부터 영세사업체의 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해당 표본지역내에서 신규 영세사업체(미확인 된 것과 73년중에 신설된 것)를 모두 색출하여 이를 포함 조사한다.

4) 종업원 5인 이상 전수조사 사업체조사와 종업원 4인 이하 영세사업체조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조사원은 표본추출된 지역 이외에서 영세사업체조사가 수행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 조사 단위(調查單位)

조사 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제품, 광산물의 생산 또는 이의 보조적인 업무)을 영위하는 경제 단위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가. 동일구내(同一構内)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 (1) 단일 경영체에 속하는 몇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고, 출근부와 임금매장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經營帳簿)를 각 공장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 (2) 경영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구입액(原材料購入額) 제품 생산액(製品生産額) 및 출하액(出荷額)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경영장부가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어도 경영장부 또는 기타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이때에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조사구에 있는 경우에는 자기 조사구에서 사업체 및 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조직 형태, 창설년, 생산공정, 종업원수는 반드시 조사하고 그 이외의 항목도 가능한데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다. 종업원 4인이하 영세사업체에서는 본사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업체로 본다.

9. 조사사항(調査事項)

가. 종업원 5인이상 전수조사 사업체(조사표 I)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2) 본사명 및 소재지
- 3) 창설년월일
- 4) 조직형태
- 5)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6)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7) 종업원수
- 8) 월별 조업일수
- 9) 연간 급여액
-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 11) 연초, 연말 재고액
- 12) 연간 주요 생산비
-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1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15) 동력시설
- 16) 건설가계정
- 17) 조사표 작성근거
- 18) 유형 고정자산

나. 종업원 5인이상 본사, 본점 (조사표Ⅱ)

- 1) 본사, 본점명 및 소재지
- 2) 창설년월일
- 3) 조직형태
- 4)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 6)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 7) 관할 사업체 명부

- 8) 건설가계정
- 9) 조사표 작성근거
- 10) 유형 고정자산

다. 종업원 4인이하 영세사업체 (조사표Ⅲ)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2) 주요 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 3) 연간 조업월수
- 4) 종업원수 및 월평균 급여액
- 5) 완제품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액
- 6) 수탁제조 의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 7) 월평균 주요 생산비
- 8) 유형 고정자산

10. 조사표의 종류 (調查票의 種類)

이 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3종의 조사표를 사용한다.

가. 본 조사표 (I)..... 본사 이외의 종업원 5인이상 대상사업체에 적용한다.

나. 본사 조사표 (II)..... 종업원 5인이상 대상사업체의 본사 (또는 본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산하 사업체와 독립된 장소에 있으며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2) 관하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부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산하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 중 어느 한 사업체

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이 때에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표(I)에 작성한다.

다. 영세사업체 조사표(Ⅲ)..... 종업원 4인 이하의 표본 영세사업체에 적용한다.

11. 조사 방법

타계식(他計式) 조사방법에 의한다. 즉 조사원이 직접 대상사업체 명부에 의하여 개개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한다. 단, 일부 대규모 사업체와 같이 장부비치(帳簿備置) 사업체에 대하여는 미리 조사표를 배부하여 기입케 한 후 이를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기입할 수 있다.

12. 집계 및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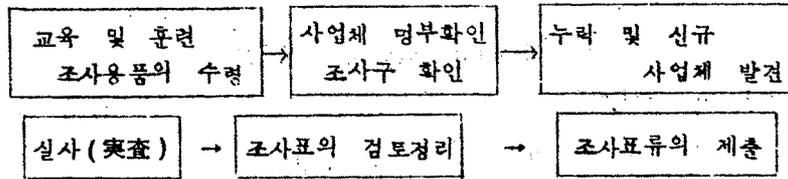
전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표가 수집되는 대로 내검, 질의조회, 부호기입, 제표과정을 거쳐 I. B. M기계 집계로 처리한 후 「광공업 센서스 보고서」를 발간 공표한다.

Ⅱ . 조사원의 임무

II 조사원의 임무

조사원은 지도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원은 조사의 제일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에 의거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조사업무의 순서



2. 조사용품의 수령

가. 조사원증

나. 사업체 명부

다. 조사표류

(1) 조사표 (I)

(2) 조사표 (II)

(3) 조사표 (III)

라. 참고책자

(1) 광공업 센서스 조사요령서

(2)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

마. 보조 인쇄물

(1) 실사일보

(2) 협조 의뢰문

바. 조사용품

사. 조사표 케이스

아. 기타

3. 사전조사 (事前調査)

가. 조사구의 확인

(1) 조사원은 사업체 명부를 수령한후, 이를 참조하여 담당 조사구의 범위 및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범위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도원이나 동, 읍, 면 직원의 협조를 얻어 담당 조사구의 경계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또는 인접조사구 담당지도원과도 이를 협조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체 명부 확인 및 보완

(1) 조사원은 자기담당 조사구내의 지리적 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최단거리로 전 지역을 빠짐없이 답사할 수 있도록, 노순(路順)과 일정(日程)을 포함한 사업체 확인, 보완 및 실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사업체 명부 확인

감습기간 중에 수령한 명부는 1973년도 광공업센서스 실사(實査)를 위하여 여러 조사에서 파악된 사업체가 수록된 것이므로 조사원은 담당 조사구내를 일일이 답사하여 이들 사업체의 존재(存廢)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명부 보완

(가) 실지(實地) 답사(踏査)하여 1972년 이전에 설립된 사업체로서 누락된 사업체와 1973년도에 신설된 사업체를 발견하여 사업체명부 후단 공란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신규라 표시한다.

(나) 현존 사업체는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종업원수」, 「생산품명」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여 오기(誤記) 사항을 사업체 명부에 직접 정정 기입한다.

(다) 폐업(廢業), 이전(移轉) 사업체는 복선(≡)으로 삭제하고 비교란에 해당 월(月)을 표시하고 「폐업」또는 「이전」이라고 기입한다. 그러나 이전 사업체는 이전 사업체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주소란에 정정 기입한다.

(라) 대도시 지역의 고층건물 지대도 상세히 알고 답사하여 사업체를 색출하여야 하며 특히 본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일히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본사가 새로이 발견되면 사업체명부에 기재하고 비교란에 본사라고 기입한다.

(마) 담당 조사구내에 1974년에 신설된 사업체가 발견될 때도 명부 후단에 기입하고 비교란에 1974년설립(設立)이라고 적어 넣는다.

(바) 영세사업체는 「계절성」이 극심하고 「폐업」, 「신규」, 「이전」등이 빈번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실사(實査)

가. 면접요령(面接要領)

-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와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단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한 다음에 조사원증(調査員証)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2) 자기 소개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며, 동시에 이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는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자료는 비밀이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조사는 7번째 조사이며 지난번과 같이 협조하여 줄것을 당부한다.
- (3) 대규모 사업체(장부 비치 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조사표를 교부한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입요령을 설명하여야 한다.
- (4) 즉석에서 조사가 가능하여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
 피조사자(被調査者)가 비협조적이거나 거절을 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도 조사원은 당황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여서는 절대보안되며 조사목적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응답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그지리에서 조사가 어려울때는 두번 세번 재방문(再訪問)하여 성의(誠意) 있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면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단, 이와같이 하여도 시종 거절할 경우에는 소속 지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나. 실사(実査)

- (1) 조사원은 조사표기입요령(Ⅲ) 조사표검토정리요령(Ⅳ)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2) 사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사업주 또는 담당 실무자가 부재중(不在中)이거나 임시 휴업일인 경우는 비망록에 사업체명, 소재지 및 조사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여 후일의 방문에 대비한다.
- (3)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전적으로 사업체에 의뢰하여서는 안되며 조사표 회수시(回収時)에는 전후 기재 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미심(未審)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체에 재차 문의하여 모순된 점이 있으면 결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 확인하여 재조사(再調査)하여야 한다.
- (4)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의 조사
 - (가) 본사(또는 본점)와 분리되어 있는 사업체의 조사표는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를 재확인하여 누락과 오기(誤記)가 없도록 한다.
 - (나) 이때에 조사표는 사업체에서 완전히 조사토록 하며 장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 전 항목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 ① 사업체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 ② 본사명 및 소재지, 전화번호
 - ③ 창설년월일
 - ④ 조직형태에 관한 항목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 (5) 본사의 조사
 - (가) 산하 사업체(傘下事業體)와 독립된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본점)……조사표(Ⅱ)로서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산하사업체……개개의 공장(사업체)별로 조사표(Ⅰ)을 각기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2개 이상의 산하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어느 한 사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는 경우:

본사(또는 분점)……① 조사표(Ⅰ)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공장(사업체)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② 조사표(Ⅱ)는 관할 사업체 명부란만 조사한다.

산하사업체……본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사업체는 본사와 함께 (Ⅰ)표로서 조사한다.

(6) 덕대제 채택 광산은 덕대단위로 조사한다.

단, 덕대업체를 조사할 때는 생산량을 파악한후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영세사업체의 조사

추출된 표본지역내의 모든 4인이하 영세사업체(광공업부문)를 이미 작성된 영세사업체 명부를 기초로 하여 조사한다.

5. 실사진도보고

가. 조사원은 조사기간중 사업체의 색출 및 기타 조사 활동 사항을 실사진도보고(소정양식)에 의하여 소속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도원은 관할조사원으로부터 실사진도보고를 수집하여 문세조사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치하고 책임자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책임지도원은 조사원 및 지도원으로부터 보고되는 조사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중앙에 보고한다.

라. 실사진도보고 제출일자

구 분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조 사 원	4 월 6 일	4 월 16 일	4 월 26 일
지 도 원	4 월 8 일	4 월 18 일	4 월 28 일
책임지도원	4 월 10 일	4 월 20 일	4 월 30 일

6. 조사표의 회수 및 제출

가. 조사표 회수

- (1)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엔 응답자에게 의뢰하되 조사표 회수시 완결된 조사표를 조사표 검토요령에 의거 오기(誤記) 누락(漏落) 사항이 없는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에 전화번호는 반드시 재확인 한다.
- (2) 지도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재심사(再審査)하여 불완전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 하도록 한다.
- (3) 지도원은 조사 누락시킴 사업체는 반드시 조사하여 조사표를 회수토록 하여야 한다.
- (4) 조사표는 실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히 회수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 제출

- (1) 조사원은 조사표가 완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표 종류별로 사업체명부의 번호순으로 모아 철하고 조사표 케이스 표지(表紙)에 기입사항을 기록한 연후 사업체명부(교육기간중 배부받은 실사용 사업체 명부)와 함께 실사 기간내에 소속 지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도원은 조사원으로부터 회수한 조사표를 검토 완료하여 시, 도 책임지도원에게 보고하고 책임지도원은 조사완료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에 송부토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 가.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 나. 조사용지 절약에 유의하되 만약 조사도중에 용지 부족이 예견되면 지도원에게 연락하여 지체없이 보충하도록 한다.
- 다. 조사도중에 미심한점이 생기면 조사요령서 또는 기타 배부자료를 다시 읽어 보고 해결하거나 소속 지도원에게 문의하여 해결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원 임의로 애매한 처리를 하여서는 안된다.
- 라. 비록 사업체에서 허위자료를 제공할지라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기입하지 말고 항상 전후 기재내용을 상호 대조하거나 또는 재차 문의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마. 조사표의 기재내용을 타용지에 전사(謄寫)하거나 외부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통계법 참조)
- 바. 배부하고 남은 협조의뢰공문이나 조사원증은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Ⅲ . 조 사 표 기 입 요 령

Ⅲ. 조사표 기입요령

1. 일반적 유의사항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사표는 심사완료 후 심사, 분류, 집계 등 여러 작업에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이나 청색의 「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 단위의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기입하여야 한다.

나.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도박도박 기입한다.

※ 기입에 유의할 숫자 : 0과6, 1과7, 4와6, 4와9, 5와6, 5와8, 6과2, 3과8.

다. 한자(漢字)로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라. 각 수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입하며 천원미단의 금액은 4사5입하고 4사5입하여 천원에 미달되는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마. 조사표 상에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바. 해당사항이 없는 칸은 사선을 우상(右上)에서 좌하(左下)로 그으며 (/)정정할 때에는 오기(誤記)된 곳에 적색으로 복선(=)을 긋고 바로 위에 정확한 것을 기입한다.

사.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품목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아. 단위는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입 요령

가. 조사표 I (5인이상 사업체용) 의 기입 요령

1) 사업체명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및 소재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 ××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장소를 말하며 시, 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구 로·통 가
 시 대전(시) 은행 (동) 136 번지의 16 호 (통 반)
 충청남도(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전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본사 (본 가)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점) 명 및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소재지 나)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
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다) 덕대제 채택에 의하여 채광되고 있는 덕대 광산은
본사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한
광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본사
명칭란 우단 (右段) 에 덕대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단, 덕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업체가 관한 사업체가
없이 적절채광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사에서
제외한다.

3) 창설년월 가) 법인인 경우는 법적 설립년 (設立年) 월일을 기입하
일 (創設 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는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年月日) 사업을 시작한 해 (年) 를 기입한다.

나) 본사와 떨어져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그 지점 사
업체가 신설된 때를 기입한다.

다)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를 기
준으로 한다.

라) 동일업종으로서 경영주가 상속하여 계승한 사업체는
최초로 창설한 해를 기입한다.

4) 조직형태 가) 조직형태라 함은 사업체의 경영주체 (기업체) 의 법
(組織形 적조직형태를 말한다.
態)

나) 이 조사에서는 주식회사, 법인 및 개인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1) 주식회사는 상법(商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말한다.

(2) 기타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合名會社), 합자회사(合資會社), 유한회사(有限會社)와 민법(民法) 및 특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개인사업체라 함은 1인 소유의 사업체를 말한다. 2인이상이 동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격(法人格)이 없는 조합과 같은 임의단체(任意團體)도 포함된다.

대 이 항목은 사업체가 속해 있는 영업주체(기업체)가 법인인가 개인인가를 구분하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기타법인으로 구분한 다음 해당 항목의 () 내에 ○표한다.

- 5) 자본금(資本金) 또는 출자금액(出資金額)
- 가) 이 항목은 법인 사업체에 한해서만 기입한다.
- 나) 1973년 12월 31일 현재로 불입이 완료된 자본금(불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다) 본사와 떨어져 있는 법인 사업체의 경우는 본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입한다.

- 6)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生産工程)
- 가) 주요생산품명
- (1)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2) 두 종류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출하액이 큰 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기입한다.

(가) 1973년 1년간의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나) 만일 (가)항의 방법으로 선택이 곤란할 때에는 종업원수 또는 설비의 정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품.

(다) 생산품이 계절적으로 변동할 때에는 최근의 실적에 관계없이 1973년 1년간에 출하액 또는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생산품.

(라) 한 사업체가 벌목과 제재 또는 점토채굴(粘土採掘)과 벽돌제조를 일관(一貫)작업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최종생산품인 「목재」 또는 「벽돌」을 주생산품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목을 원목대로 판매하고 극소량만을 제재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결국 임업(林業)중 벌목업으로 보아야 한다.

(리) 조사표(1) 13의 (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의 ①번 및 ②번항목의 완제품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나. 생산과정 (生産工程)

(1)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 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목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요약기입 한다.

예 : (가) 광업의 경우

① 무연탄의 채굴부터 선광(選鉱)까지 일관작업

을 하고 있는 경우

「채굴→선광→무연탄」

(나) 제조업의 경우

※ 최초의 투입 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구루타민산 소다 (구루타민산 나트륨) 을 제조하는 경우

「전분 (澱粉) →당화→발효→농축→산분해 (酸分解) →여과→농축→염산염 (鹽酸塩) →탈색→결정→구루타민산 소다」

② 전분을 제조하는 경우

「고구마·옥수수→마쇄전분유 (磨碎澱粉乳) →침전→전분→정제→생전분」

③ 콜라를 제조하는 경우

「설탕물→용해→여과→첨가물배합→여과→원액저장→원액주입→탄산수주입→타전→콜라」

④ 면사를 제조하는 경우

「원면 (原綿) →면조 (綿條: sliver) →정방 (精紡) →단사 (單糸) →합사 (合糸) 또는 연사 (撚糸) →면사 (綿糸)」

⑤ 면직물 (면포) 를 제조하는 경우

「면사→정경 (整經) →호부 (糊付) →직조→정리→면직물」

⑥ 마니라 판지를 제조하는 경우

「조성 (휴지, 팔프를 용해시키는 작업) → 초지
(와이어에 의한 초지) → 건조 → 완성 → 판지」

⑦ 재생고무를 제조하는 경우

「폐고무 → 선별 → 분쇄 → 약물배합 → 탈유 (脫硫) →
재생 → 포장 → 재생고무」

⑧ 리사지 <별명 일산화연 (一酸化鉛), 금밀타 (金
密陀) 항색 산화연> 연분식 (鉛粉式)

「납 → 용융 → 성형 → 연분 → 산화 → 분쇄 → 리사지」

⑨ 벽돌을 제조하는 경우

「점토, 규사, 골재 → 배합 → 성형 → 소성 (燒成) →
벽돌」

7) 종업원수
(從業員數)

가) 사업주 및 무급 가족 종사자

사업체의 소유주 (출자자 포함) 와 그 가족 (동거
자 포함) 으로서 사업체의 운영을 위해서 사무나
업무에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한 자이며, 일정한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명의만으로도만 사업주이고 1주일에 24시간
이상을 취업치 않는 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용자 (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임
금이나 급료 (賃金, 給料)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

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녀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교(日雇) 종업원 및 병가자 사고로 인한 단기휴가자와 파업중인 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5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 사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생산종업원

생산에 직결되는 현장 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생산의 보조작업(補助作業)에 종사하는 자와 자가생산 종업원을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 종사하더라도 실제로 육체적 작업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광업의 경우: 채광, 굴진(掘進), 갱내지주(坑內支柱), 천양(攪揚), 환기, 배수, 천공(穿孔), 발파, 분쇄, 선광, 검사, 저장, 출하, 보전수리와 자가용품의 생산부분 및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상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공, 검사, 검량(檢量),

입하(入荷), 저장, 조작, 포장, 입고, 출고, 보수(補修)와 보존적인 생산품의 생산업무, 생산업무의 기록사무 등 기타 상기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생산종업원이라 한다.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생산종업원 이외의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생산작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 등을 말하며 법인체에 있어서 보수를 받는 지배인 층역 등을 여기에 포함한다.

다) 3, 6, 9월말 종업원수는 단, 여 구분없이 포함 기입하고 12월말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와 피용자는 남녀별로 구분하여 숫자를 기록한다.

8) 월별조업일수(月別操業日數)

가) 1973년 매월별로 그 월(月)의 조업한 일수(日數)를 기입한다.

나) 조업일(操業日)이라 함은 그 사업체의 본래의 생산이나 수리, 가공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하며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정전 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광업이나 제조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겸
 영(兼營)하는 경우(예, 상업·농업), 이들에
 관련된 산업활동만을 하였으면 조업일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9) 연간급여액
 (年間給与額)

가) 1973년도 1년간에 정기 또는 부정기(不定期)
 를 불문하고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
 에게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임
 금, 봉급, 상여금(賞與金), 각종수당, 생계보조금
 등을 말하며 현금급여 이외에 현물(現物)로 지
 급된 것도 포함한다.

나) 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 대한 급여액은 제외한다.

다) 1973년 이전의 급여로서 체불(滯払)된 것을
 1973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며 1973년중에 지
 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치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
 (未払額)은 포함한다.

라) 급여액은 세금, 저금, 근로조차비 등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현물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지급현물이 자가생산품일 때에는 지급사
 의 공장인도 가격으로, 구입품일 때에는 구입가격
 으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10) 연간 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1973년도 1년간의 완제품 출하액, 폐품(廢品) 출하액,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을 말하며, 1973년간에 걸어난 출하 및 수탁제조 또는 수리에 대한 미수금도 포함하여 기입한다.

가) 완제품 출하액(完製品出荷額)

(1)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1973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위탁판매,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된다.

(2) 동일기업내의 타 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과 전분 또는 선물용으로 증정한 것 및 사무용이나 증업원 급여용으로 그 사업체에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제품판매를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에 대하여는 본사에 조회하여 출하된 것만을 계상한다.

(3) 구입한 상품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轉賣)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4) 금액은 공장 인도가격, 광산품은 최근 역도(駅渡) 가격으로 평가하며 내국소비세(内國消費稅)가 부과(賦課)되는 품목들에 대하여는 이들을 포함한 가격에 의한다.

※ 사업체에 따라서는 공장인도가격에 이 내국소비세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원은

이 점을 유의하여 반드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5) 부산물로서 품목별로 출하액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는 품목별 출하액만에 기입한다.
- (6) 외국에 수출된 제품으로 외화로 판매 계약된 것은 계약 당시의 외환시세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기입한다.
- (7) 완제품 출하액은 13의(1)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집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폐품판매액 (廢品販売額)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폐품, 예를 들면 방직공장의 설사(屑糸), 공장이나 인쇄소에서 나오는 폐지(廢紙), 불합격품(불량품) 등을 판매하여 수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본 항목의 폐품은 제품의 생산과정 이외에서 나오는 폐품 즉 파손된 기계부속품, 사용불능인 책상 사무용품 등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다) 위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 (受託製造 및 修理收入額)

- (1)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 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 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대금을 기입한다.
그러나 타 산업으로부터 위탁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제조업의 정의 참조)

(2) 보통 가공업(加工業)이라고 불리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위의 가) 완제품 출하액에 계상한다.

11) 연초·연말재고액 가) 연초 재고액은 1973년 1월 1일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3년 12월 31일 현재로 재고 대상물이 어디 있는가를 불문하고 그 사업체가 소유하는 것이면 모두 포함하고 「완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원재료」 및 「연료」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나) 완제품의 출하를 본사(본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에 본사로 반출된 제품으로서 출하되지 않고 본사(본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 여기에 포함한다. (본사 조사표Ⅱ 참조)

다) 금액은 장부가가에 의한다. 그러나 장부가 없는 경우 각각 연초(年初), 연말에 시가(時價)에 의한 추정액을 기입한다.

라)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았으나 아직 출고치 않은 미출고분은 제외한다.

그러나 타 산업으로부터의 수탁제조에서는 직접 원재료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제조업 정의 참조)

마) 여기에서의 완제품 연말재고액은 다음 13의 (2) 및 (3)의 품목별 완제품 연초·연말재고액·합계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12) 연간주요생산비 (인건비 제외) 1973 년간 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 (소비) 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를 원재료비, 연료비, 구입전력비, 구입용수비, 위탁생산비, 수리 및 유지비 등으로 구분 조사한다.

가) 원재료비 (原材料費)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3 년간 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 (容器) 등 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 금액을 말한다.

(1)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생산을 시킨 경우에는 제공한 원재료비를 포함한다.

(2) 동일 기업체의 타 사업체로부터 무상 (無償) 으 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임업·수산업·광업등을 겸영 (兼營) 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자가 취득한 원재료는 사용 당시의 시가 (時價) 에 운임을 포함하여 조사거입한다.

(3) 수탁생산 (受託生産) 을 하는 경우

(가) 광업 및 제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

을 하는 경우는 지급받은 원재료는 그 사업체의 원재료로 계상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광업이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서비스업·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는 경우는 위의 업종이나 공공단체가 본 조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제공받은 원재료를 사용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하여 조사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수탁 사업체의 생산품도 직접 출하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 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작업으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중간제품도 출하액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 연료비(燃料費)

(1) 1973년간에 가열로(加熱爐)(난방포함), 동력 및 자가 발전용으로 사용(구입이 아님)한 연료의 사용수량과 금액을 석탄류, 유류 및 기타 연료별로 기입하며 금액은 구입가격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제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다) 구입전력비 (購入電力費)

(1) 1973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요금을 말한다. 그리고 사무실용의 전등요금도 포함시켜 조사하며 1973년간에 지출한 전기요금으로서 미지출(未支出)된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2) 자가발전예 소요된 연료비는 여기에서 제외하고 12항(2)란의 연료비에 포함한다.

라) 구입용수비 (購入用水費)

1973 년간에 사무실용과 종업원의 음료용수를 포함한 생산에 사용된 모든 용수의 요금을 말한다.

마) 위탁생산비 (委託生産費)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생산을 시킨 경우에 수탁사업체에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할 가공임을 말하며 운임을 포함한다.

(1) 위탁 생산을 위하여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여기에서 제외하며 (가)의 원재료비에 포함한다.

(2) 출판사에서 원고만을 주고 인쇄소에 인쇄를 시켰을 때에는 인쇄비용은 포함하나 원고를 위한 비용(原稿料)은 이 조사에서 생산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수탁사업체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제조하였

을 때에는 위탁사업체는 타 사업의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탁생산에 계상하지 않으며 이때 가공수리가 없이 그대로 출하한 전매품(轉売品)은 그 사업체의 출하액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수리 및 유지비(修理 및 維持費)

생산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제 비용(諸費用)을 말한다.

여기에는 수리 및 유지에 사용한 재료, 기계의 윤활유류, 소모품, 부속품 등의 구입액이 포함되며 이는 회계상에 경비로 처리될 성질의 것을 여기에 계상한다.

(1) 공장 증축이나 기계 등의 개조로 그 자산(資產)의 성능이 높아지고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회계상 유형고정자산계정에 처리되어야 할 것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유형고정자산」란에 포함 기입한다.

(2) 유실, 도난, 화재 및 막대한 손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이를 구입 대체시킨 경우는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액 또는 손해액」에 기입한다.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가) 여기에서는 조사항목번호 「10-(1)」 완제품 출하액과 「11-①-(1), (2)」의 연초, 연말 완제품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록한다.

나) 따라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0-(1)」와 품목별 완제품 연초, 연말재고액 합계는 「11-①-(1), (2)」와 각각 일치한다.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부록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 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라) 각 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마)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출하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바) 만약 그 사업체의 제품이 부록의 「품목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 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이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 1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가) 조사항목번호 「12-(1)」 원재료비와 「11-③-(1), (2)」의 연초·연말 원재료 재고액에 일괄적으로 기입된 총금액을 다시 품목별로 수량과 금액을 기입한다.
 - 나) 따라서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는 「12-(1)」과 품목별 원재료 연초·연말 재고액 합계는 「11-③-(1), (2)」와 각각 일치한다.
 - 다) 품목별 기입에 있어서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명을 부록「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사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단위가 이 표에서 지정된 단위와 다를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라) 각항의 분류번호 역시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번호를 조사원이 직접 기입한다.

- 마) 여러가지 원료를 사용하는 사업체에 있어서는 사용액으로 보아서 큰 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바) 사용한 원재료는 생산된 완제품과의 투입연관성에 유의하여 생산에 관계없는 원재료를 포함하거나 투입된 원재료를 제외해서는 안된다(부록2 참조)
- 사) 구입사용한 원재료가 외산품이면 1에, 국산품이면 2에 ○표하여 동일한 품목으로 외산품과 국산품이 병행하여 사용된 경우 일련번호를 달리하여 다음란에 기입한다.
- 아) 외산품이라 함은 그 사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것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상이나 시장에서 구입한 외국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1차 사용되었던 것이나 가공된 것을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그것이 외산품이라 하더라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 재) 직접 수입한 것은 수입가격을 그 당시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평가하고 그 외는 운임을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평가한다.
- 차) 만약 그 사업체에서 사용한 원재료가 「산업분류 및 품목 분류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어디에 분류할 것인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품목명칭과 수량 단위에 의하여 기입한다.
이 때에는 구분이 힘든 품목명칭, 수량 단위, 원재료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후에 조사본부에서 그 조사표를

심사할 때에 이들 품목을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15) 동력시설 중리중인 것과 예비용의 것을 포함하여 사업체가 1973.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동기(電動機) 및 원동기(原動機)와 자가발전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기(發電機)에 대하여 그 능력을 기입한다. 능력은 원제작자가 붙인 규격표에 의하여 발전기 및 원동기에 대해서는 마력(HP)으로 발전기에 있어서는 kW로 조사한다.

(1) 전동기(電動機)

전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력기계를 말하며 진도(伝導)벨트에 의하여 기계에 연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기계에 부착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생산기계 이외의 기계 즉 사무기계 및 실내 장치에 부착된 것은 제외한다.

(2) 원동기(原動機)

전동기 이외의 생산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모든 동력기계를 말한다.

그러나 발전기용, 차량용 및 선박용의 것은 제외한다.

(3) 발전기(發電機)

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입한다.

16) 건설가계정 가) 건설가계정은 건설중의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투자지출이나 건설을 위하여 투입 종당될 재료 및 기계설비 등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되었으나 아직 현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의 완성,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건설의 목적물인 고정자산이 완성되거나 기계설비 등이 입수되었을 경우에는 해당계정으로 처리 발소되는 계정이다.

나)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의 차변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다)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1973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 사이에 건설가계정에서 고정자산계정으로 매체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라) 건설가계정 연간증감

건설가계정 연간증가에서 건설가계정 연간감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입한다. 연간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액 앞에 △표시를

한다.

미)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간증감액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건설가계정의 연말잔액을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금액은 장부가격에 의한다.

- 17) 조사표 작성근거
- 가) 조사결과와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고 1968년 광공업센서스의 장부조직과 비교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출하액 및 개고액」과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8) (A) 유형고가 자산분류

정 자산 (법인사업체용) 제 18(8)항 유형고정자산란 우측의 <자산분류>를 참조하여 기입한다. 「3. 건물부속설비」는 장부상 계정과목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만 기입하고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2. 건물」에 포함한다.

나)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

1973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부가격을 기입하되 회계연도가 상이하야 연말현재가액을 작성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기입한다.

다) 연간취득액

연간취득액이라 함은 1973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增改築)을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1) 신 품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자산의 취득, 설치 및 증개축한 부분을 말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 수입품도 신품에 포함한다.

(2) 중고품

신품이외의 중고자산을 말한다.

(3) 평가방법

구입한 것에 대하여는 설치비(設置費)를 포함한 구입가격으로, 동일기업내의 다른 사업체로부터의 양수(讓受)분은 양수당시의 평가액으로, 그리고 자가 건설 또는 자가생산의 경우에는 그것이 완성하였을 때의 건설 또는 생산가액으로 기입한다. 단,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장부가격이 명목상으로만 증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간 처분액

1973 년간에 매각(売却), 양도(讓渡), 재해(災害)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감소액을 당초의 가격으로 기입한다.

(1) 신품 및 중고품

신품 및 중고품의 구분은 라)항 연간취득액의 구분방법과 동일하다.

(2) 평가방법

처분액의 평가는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로 매매가 없었을 경우에는 가치 감소요인의 발생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한다.

마) 연간 감가상각액

1973 년간에 발생한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격의 감소액을 기입한다.

바)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 (연간취득액 - 연간처분액)

(1)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은 연간취득액에서 연간처분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되며 연간처분액이 연간취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2) 연도별 순 자산취득액을 기입할 때에는 연도별 예비자산포 작성시 대변과 차변의 차액을 기입하며, 장부상의 감가상각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연간취득액 및 연간처분액의 개념은 라)항 연간
취득액 및 마)항 연간처분액의 개념을 참조한다.

사) 1968년말 현재 총 평가액

1968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기입하되 회계연도가 상이하여 연말현재가액을 작성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기입
한다.

아) (19년)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은 자산을 재평가하기
직전의 자산평가액과 재평가한 직후의 자산평가액을
기입한다.

(1) (19년)란에는 1965년 1월 1일 이후에 실
시된 자산 재 평가중 최근의 자산 재 평가를 실
시한 연도를 기입한다.

(2) 「재 평가직전 기말잔고」는 최근의 자산 재 평
가를 실시할 당시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
한 잔액을 기입한다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3) 「재 평가직후 기말잔고」는 최근의 자산 재
평가가 실시된 이후의 재 평가된 자산액을 기입
한다.

18) (B) 유형고 가) 자산분류

정 자산
(개인사업채용)

자산분류는 조사표 우측의 <자산분류>를 참조하여 분류하도록 하며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 선박 및 운반구」는 사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해당자산(차용한 부분을 포함)중에서 시가가 큰 자산부터 기입하고, 공란(空欄)이 부족할 경우 나머지 자산을 합산하여 기타란에 기입한다.

나) 수 량

(1) 「1. 토지」는 부동산투자용 위한 것을 제외한 총 면수를 기입하고 「2. 건물」은 동수와 총 연면적을 기입하며 「3. 구축물」은 구축물의 총 건수를 기입한다.

(2) 「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기구 및 비품」, 「6. 차량, 선박 및 운반구」는 해당자산의 단위와 수량을 기입하고, 기타는 총 건수를 기입한다.

다) 소유관계

(1) 소유관계는 해당자산의 소유 또는 차용으로 구분하여 해당번호에 ○표한다.

(2) 자산분류별로 「소유」와 「차용」이 중복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것의 해당번호에

○표한다.

예 : 「2. 건물」에서 소유부분이 100 만원이고 차
용부분이 150 만원일 경우 차용(2)에 ○표한다.

라) 취득시기 및 신고부분

(1) 취득시기

해당자산을 취득한 연도를 기입하고 동종(同種)
의 자산의 취득연도가 상이할 경우 취득액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입한다.

(2) 신·중고부분

취득당시 해당자산이 신품이나 중고품이냐로 구분
하여 해당번호에 ○표한다. 신품과 중고품이 중복
될 경우 자산평가액이 많은 것을 택한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신품은 물론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도 신품으로 간주한다.

마)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현시가)

1973년말 현재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해당자산
(차용한 부분을 포함)의 시가를 기입한다.

바) 1973년 유형고정 자산

(1) 연간 취득액

1973년간에 유형고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
치 및 증개축하기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신품은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유형고정

자산의 취득(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 설치 및 증 개 축을 위하여 연간 지출된 총 비용을 기입하고 중고품은 싼 품이외의 중고자산 취득액을 기입한다.

(2) 연간 처분액

1973 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고정 자산의 실질적인 감소액을 기입하며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부분은 제외한다.

나. 조사표 II (본사 또는 본점용)의 기입 요령

일 반 사 항

- 1) 조사표(II)는 본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하는 것이므로 본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만 기입하며, 장부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개의 산하사업체와 통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기입한다.
- 2) 산하사업체가 2개 이상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 조사표의 관할사업체 명부란만 기입하고 기타사항은 함께 있는 사업체조사시 조사표(I)에 기입한다.
- 3) 각 항목별 용어의 정의는 조사표(I)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 입 요 령

- 1)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사표 (I) 의 제 2 항과 동일
- 2) 창설년월일 : 조사표 (I) 의 제 3 항과 동일

- 3) 조직형태 : 조사표(I)의 제 4항과 동일
- 4) 차본금 또는 출자금액 : 조사표(I)의 제 5항과 동일
- 5) 종업원수 및 연간 급여액
- 가) 종업원수
종업원수중 피고용자수는 본사의 사무 및 기타종업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업체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기타의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7항과 동일하다.
- 나) 연간급여액
본사(본점)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 1973년간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9항과 동일하다.
- 6)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 가) 본사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나) 금액은 장부가액에 의하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연말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 7) 관할사업체 명부
- 가) 경영주체가 동일한 기업체에 소속된 산하(傘下)사업체가운데 광업·채석업 및 제조업 사업체를 기입한다.
- 나) 산하사업체 2개이상 있고 그중 1개 사업체가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는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에 대하여만 기입한다.
- 다) 산하사업체가 모두 본사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조사표(II)는 조사하지 않는다.

8) 건설가계정 조사표(I)의 제 16항과 동일

9) 조사표 작성 근거 가) 조사 결과의 신빙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장부 조직의 발전도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유사한 조사의 참고자료를 얻고 1968년 광공업 센서의 장부조직과 비교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나) 「원재료 및 연료재료액」과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다)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0) 유형고정자산 가) 유형고정자산은 본사계정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에 한한다.

나) 본사와 분리된 사업체(공장)의 증축·개축 등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과 처분 등은 그 사업체의 것으로 분리하여 이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 유형고정자산의 정의 및 기타 기입요령은 조사표(I)의 제 18(A)항과 동일하다.

다. 조사표Ⅲ (4인이하 영세사업체) 용의 기입요령

일반사항

- 1) 조사표 (Ⅲ) 은 종업원 4인이하의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단편적인 기록이나 기억 또는 추정에 의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적인 조사항목만을 조사한다.
- 2) 일단 선정된 조사항목은 조업기간중 월간평균수치 (月間平均數值) 를 조사하여 연간조업월수 (年間操業月數) 로 곱하여 연간 추정치불 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므로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 3) 조사항목의 정의가 조사표 (I) 과 상이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가) 완제품 판매액
완제품 출하액은 영세사업체 조사에서는 그 개념 및 자료수집에 난점이 있으므로 완제품 판매액만을 조사한다.
 - 나) 수탁제조수입액
영세사업체에서는 수탁제조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완제품 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으로부터 독립된 별도항목으로 조사한다.
 - 다) 주요생산비
영세사업체의 주요생산비는 「원재료」 와 「연료」 사용액을 위주로 조사한다.
- 4) 기타유의사항은 Ⅲ. 조사표 기입요령중 I. 일반적 유의사항을 참조한다.

기입요령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가) 사업체의 명칭이라 함은 사업체가 영업상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한국××공업주식회사 진해공장」

「주식회사 ××산업사 울산공장」

나)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다)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며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 통, 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며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 단위 명칭에 반드시 ○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 : 구 로·동 가
 시 대전 (시) 은행 (동) 136 번지의 16 호 (통·반)
충청남(도) 군 읍·면 리

라) 주소는 한글로 기입하며 한문을 기입할 경우는 정자(楷書)로 기입한다. (통반까지 상세히 기입할 것)

마) 전화번호란을 각별히 유의하여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주요생산품명 가)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① 이 항목은 사업체의 업종을 분류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며 사업체가 한 종류의 품목만을

생산할 때에는 그 품목을 기입한다.

- ② 두 종류이상의 품목을 생산할 때에는 1973년중 판매액이 가장 큰 품목을 기입한다.

나) 생산과정

생산공정은 주된 품목하나에 대하여 최초의 투입품명(원재료명)부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품명까지의 순서를 단계적으로 기입한다.

※ 최초의 투입원재료는 원재료라 기입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입하여야 한다.

- ① 규석의 채굴부터 선광(選鉱)까지의 일관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의 예

「채굴→선광→규석」

- ② 건조멸치를 제조하는 경우

「생멸치→염포→건조멸치」

- ③ 남자용 양복을 제조하는 경우

「모혼방직물→재단→재봉→남자용 양복」

- ④ 여자용 가죽신을 제조하는 경우

「소가죽→재단→제화→여자용 가죽신」

- ⑤ 비닐우산을 제조하는 경우

「대나무 비닐→절단→접착→비닐우산」

- ⑥ 각종 죽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대나무→조깅→엮음→죽제품」

- ⑦ 장독을 제조하는 경우

「고령토→옹기→가열→장독」

- ⑧ 부르크를 제조하는 경우

「세멘트, 모래→배합→성형→건조→부록크」

3) 연간조업월수 가) 조업월이라 함은 15일이상 작업한 달(月)을 말한다.

나) 연간 조업월수는 연간추정치 산출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

4) 종업원수 및 월평균급여액 가) 종업원수

① 유급종업원이라 함은 생산종업원과 사무 및 기타 종업원을 불문하고 노무의 대가를 지급하는 피고용자 전체를 말한다.

② 해당 종업원수에 ○표하고 5인이상으로 편명된 사업체는 비교란에 종업원수를 별도로 기입한다.

나) 급여액

① 급여액에는 유급종업원에게 조업기간중 지급한 월 평균급여액을 기입한다.

② 자체생산된 제품 또는 기타 현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하여 기입한다.

③ 1973년 이전의 급여로서 채불(滯払)된 것을 1973년에 지급한 것은 제외하되 1973년 중에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의 미불액(未払額)은 포함한다.

5) 완제품의 월 가)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완제품과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 제조한 완제품중에서 1973년간에 판매한 것을 말한다.

※ 직접판매 또는 현금판매, 외상판매를 불문하고 전부 포함한다.

나)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 제조한 완제품을 제외한다.

그러나 타 산업으로부터 수탁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다)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의 기입은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참조하여 지정된 품목명칭과 수량단위를 기입하고 구분이 힘든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단위를 기입한다.

라) 완제품 판매량은 월 평균판매량을 기입하고 판매액은 월 평균 판매액을 기입한다.

6) 수탁제조 의 가) 원재료 또는 중간제품을 타 광공업사업체로부터 월평균 생산 제공받아 제조 또는 가공처리하여준 대가나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품을 수리하여준 대가로 받았거나 받아야 할 매금을 기입한다.

나) 그러나 타 산업 즉 정부에서나 도소매업 부문에서 수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를 구입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완제품 판매량 및 원재료 사용액을 모두 조사하여 제 5항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에 가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을 한 경우에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하여 생산, 출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다) 임가공업(賃加工業)이라고 불리우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자기 소유의 원재료나 중간제품에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제품이 되는 것이므로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제 5항 완제품 판매량 및 판매액에 가입한다.

라) 특히 수탁제조수입액은 수탁제조한 완제품이 가격이 아니라 가공임(加工賃)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월평균 주요 생산비

가) 1973 년간에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여러가지 비용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생산비인 원재료와 연료사용액을 구분하여 가입한다.

나) 원재료비

① 제품의 생산 또는 수리가공을 위하여 1973 년간에 실제로 사용한 원재료, 부분품, 용기(容

器) 등과 화학약품, 포장재료비와 같은 보조재료의 사용금액을 말한다.

② 외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원재료와 농업·임업·수산업·광업등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사업체가 자가취득한 원재료는 사용당시의 시가(時價)에 의한다.

③ 타 광공업 사업체로부터의 위탁제조인 경우에 제공받은 원재료는 제외하며, 다른 산업의 사업체(상업·서비스업·건설업)나 정부 및 공공단체로부터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은 경우에 제공받은 원재료는 총투입량(總投入量)을 조사하는 뜻에서 하청업자 자신이 원재료를 구입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④ 이미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하고 그 중간제품을 다시 사용하여 일관작업으로 최종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최초의 원재료에 대하여만 기입하고 다시 투입된 중간제품은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는다.

대) 연료비

(1) 가열로(加熱炉)(난방포함) 및 동력으로 사용한 연료(석탄류, 석유류, 기타연료)의 구입가격을 합산 기입한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이라도 그 사업체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재료비에 계상한다.

예 : 연탄공장에서의 무연탄

라) 기 타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조업기간중 월 평균 지불액을 기입한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중 가구사용분과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후자의 지불액만을 기입한다.

8) 유형고정 자산 가) 유형고정 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이 있는 건물 및 구축물(構築物), 기계기구 및 장치(裝置), 차량 및 운반구(運搬具) 등을 말하며 영업권, 특허권, 지상권, 광업권 등의 무형고정 자산은 제외한다.

(1) 토지, 건물 및 구축물

토지는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垵地), 운동장 등을 말하며 부동산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건물은 공장, 사무소, 기타 부속 건물과 냉방장치, 통풍장치 등과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고 구축물은 담장, 우물, 도로 등을 말한다.

(2) 기계기구 및 장치

기계는 동력기계, 제조기계, 가공기계 등을 말한다.

여기에 내용공구(耐用工具) 및 기구, 집기가 포함되는데 집기란 내용년수가 1년이상이고 1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차량 및 운반구

차량 또는 기타의 운반구를 말한다.

Ⅳ.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IV. 조사표 검토 정리요령

1. 항목별 검토 정리요령

- 1) 조사표가 오손(汚損)되었을 때에는 타 조사표에 옮겨 다시 작성한다.
- 2) 조사표상의 숫자 기록이 정확한가를 검정한다.
- 3) 조사구별로 철해진 조사표가 조사표 표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 4) 사업체명을 생략 또는 간단히 줄여서 기입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고 특히 소재지는 행정구역 단위가 명백히 구별(○표)되었는가를 확인한다.
※ 사업체 명부와 동일하여야 한다.
- 5) 자본금, 출자금액은 주식회사와 기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6) 주생산품명이 「완제품출하의 품목별 내역중」 출하액이 가장 큰 품목명과 일치하는가를 검토한다.
- 7) 사무 및 기타 종업원에는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를 잘못 포함시키지 쉬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8) 개인 기업체일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9) 급여액은 종업원의 현실적인 급여 수준에 미달되어서는 안되므로 1인당 월간 급여액을 계산(概算)하여 합리성 여부를 검토한다.
- 10) 수탁생산의 경우에는 원재료비가 미소하게 계상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체가 광공업 사업체가 아닌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출하(시장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 11) 원재료비란은 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내역을 참조하여 계산되지 않은 원재료비가 있는가를 검정하고 자가생산한 중간제품의 자가 사용분이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지 않았는가를 검정한다.
- 12) 연료비는 물가표를 참조하되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을 검토한다.
- 13) 구입전력비와 구입용수비는 업종과 규모를 감안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되 전동기의 능력을 감안한다.
- 14) 위탁생산비는 업종과 규모 및 출하액에 의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 15) (가) 「연간 주요 생산 경비」의 항목별 검토가 끝나면 합계액을
 계산하고
 (나) 주요 생산비와 금액액 총계는(연말재고액 합계 - 연초재고액 합계 + 연간출하액 및 기타 수입액) 보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
- 16) 제품 판매액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완제품 출하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다.
- 17) 연간완제품 출하액의 품목별 내역은 「분류번호, 품목명, 단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단위가 틀린 경우에는 환산 기입한다.
 수량과 금액을 비교하여 단위당 가격이 합리적인가를 가격표를 참고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18) 다음 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 |
|-----------------|---|-------------------------|
| 10 항 (1)완제품 출하액 | - | 13 항(1)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
| 11 항 ①완제품 재고액 | - | 13 항(2), (3)품목별 완제품 재고액 |
| 11 항 ③원재료 재고액 | - | 14 항(2), (3)품목별 원재료 재고액 |
| 12 항 (1)원재료비 | - | 14 항(1)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

19) 유형고정자산 조사표 검토정리 요령

가) 유형고정자산(A)

- ①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은 자산분류별로 유형고정자산 수량과 비교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한다.
- ②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도별 순자산취득액은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은 負(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다.
- ④ 자산분류별로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은 1968년말 총 평가액에 연도별 순자산취득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즉,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 ≤ 1968년말 현재 총 평가액 + 연도별 순 자산취득액 (69-72) + 1973년 취득액과 처분액의 차
- ⑤ 자산재평가가 있었을 경우 자산재평가액에 그 이후의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을 합하면 같게 된다.

나) 유형고정자산(B)

- ① 1973년말 현재 총 평가액은 자산분류별로 유형고정자산 수량과 비교하여 금액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반드시 현 시가를 기입한다.
- ②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차량, 선박 및 운반구는 주요품목(자산액이 큰 것)부터 빈칸을 작성한 후 나머지만 기타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2.1 일반적인 사항

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품목도 품목분류표에 의하여 다시 검토하여

상세히 조사하도록 한다.

나. 계절에 따라 생산품이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품목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한다.

동일 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품목명 옆에 () 하여 광업은 품위를 화학제품은 농도를 기입해야 하며 공란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표 후면 적요란에 규격과 금을 참고로 기입하여야 한다.

다.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했을 경우는 출하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때에는 원재료비에 이중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실제 비용이 계상되도록 문의하여 처리한다.

라. 유고 사업체는 실사일보를 이용하여 시·도 통계과에 연, 월, 일 및 유고 사유를 보고하고 휴업 중이어서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되면 반드시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2 소분류별 문제점 및 유의사항

가. 광업

1) 소분류 210 (석탄광업)

석탄광업은 무연탄 및 갈탄의 채굴에 종사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연탄(3540101)을 여기에 분류하는 사례가 많음.

연탄제조사업체에서 품목을 *무연탄*으로 기록한 경우일지라도

석탄광업에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소분류 230 (금속광업)

가) 조사표상의 조사항목 1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란에는 광석의 품목명을 기재한 후 괄호하여 품위를 기입한다. 품위는 해당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혹은 비금속의 함유량(%로표시)을 말하며,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각 광업소에서 판매할 당시의 표준이 된 품위를 기입하면 된다.

나) 혼합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에 분류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도 순도 또는 함유량을 괄호안에 기록한다)

다) 금광, 은광 사업체는 금광석, 은광석과 금괴, 은괴를 출하한 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품목명 분류시 주의할 요하는 품목

(1) 산화철은 적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분철은 자철광석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동일한 명칭의 품목 [분철(철가루)]이 3710905에 분류되고 있으나 사업체의 성질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3) 철광석은 자철광석과 적철광석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4)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5) 휘수연은 모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3) 소분류 290 (비금속 광업)

- 가) 대리석 조사시에 대리석의 채굴은 여기서 조사하나 채굴된 대리석을 가공하여 건축자재 등을 만드는 경우는 3699304 (대리석 및 돌조각품) 에 분류한다.
- 나)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일관작업으로 시멘트를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투입된 부분은 본 조사에서는 생산비중 원재료비로 조사되어야 한다.
- 다) 백토는 고령토에 포함되어야 한다.
- 라) 석면 암석을 채굴하거나 채굴된 암석을 두드리고 펴고 세척하는 것까지는 2909901 에 분류하나 이것을 가공하여 봉상, 피상 등의 제품을 만든 것은 3699601 에 분류한다.

나. 제조업

1) 소분류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 가)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관 (can) 또는 상자 (C/S) 로 기입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kg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통조림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나) 도정업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도정하여 주는 형태를 취함으로 품목란은 기입하지 않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 (19-③) (다)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벼, 보리 등을 구입하여 도정한 경우에도 도정료만 기록하여야 한다.
- 다) 제분업에는 관수용 민수용을 불분하고 모두 포함 조사한다. 제분업의 부산물이 #사료#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조제된 것이 아닐 때에는 3116299 (각종 가루 부산물)에 분류하고, 조제된 배합사료는 312201에 분류한다.

라) 빠다빵, 안꼬빵 등도 식빵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매)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춘장은 된장이나 고추장에 포함시키지 말고 3121299 (기타의 장류)에 포함시켜야 한다.

باء) 조미료 및 인공감미료 제조업(31213)에는 소오스, 식초, 구루타민산소다 등만 포함하고 사카린은 3511905에, 돌친은 3511915에 분류한다.

사) 식빵, 건빵, 사탕, 과자류 등을 「관」 또는 「병지」로 조사하는 사례가 많으나 지정단위가 kg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kg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아) 옛의 단위는 kg이다. 물엿 역시 kg으로 환산 조사한다.

2) 소분류 313 (음료품 제조업)

가) 알콜 1%이상 함유한 음료품은 주류에 분류하고 알콜을 1%이하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품은 청량음료에 분류한다.

나) 소주와 탁주의 경우 통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통합되는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합동관리위원회에서 조사된 것이 사업체에서 이중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탁주 생산업체에서 약주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합하여 조사하거나 어느 한 품목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주정, 소주,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 등 지정단위는 l임으로 「되」 또는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l로 환산하여야 한다.

$$1\text{되} = 1.8\text{ l} \quad 1\text{ l} = 0.556\text{ 되}$$

마) 환타, 오란C 등의 청량음료는 주우스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باء) 동일 품목으로서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

여 다음 〇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번 호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3131201	소 주 } x	25°	ℓ	200
3131201		30°	ℓ	300
3131201 0		25° ~ 30°	ℓ	500

3)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가) 섬유의 통일명칭

섬 유 의 종 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면 (綿)	면	Cotton
모 (毛)	모	Wool
견 (絹)	견	Silk
마 (아마 및 저마)	마	Linen & Ramie
비스코스섬유	인견, 비스코스	Viscose
동 (銅) 암모니아섬유	큐프라	Cuprammonium
아세테이트 섬유	아세테이트	Acetate
나일론, 섬유	나일론	Nylon
폴리비닐 알콜계 섬유	피, 브이, 에이	P. V. A.
폴리 염화비닐계 섬유	피, 브이, 씨	P. V. C.
폴리 염화비닐리덴계 섬유	염화 비닐리덴	Vinyliden Chloride
폴리아크리 노리트릴계 섬유	아크릴	Polyacryl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폴리에스테르	Polyester
폴리프로피렌계 섬유	폴리프로피렌	Polypropylene

섬유 종류	통 일 명 칭	
	국 문	영 문
폴리청화 비니리덴계 섬유	청화 비니리덴	Polyvinylidene
폴리우레탄계 섬유	폴리우레탄	Polyurethane

비고: 기타 섬유 명칭을 표시할 때는 학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 (교직포함)

(1) 면과 타섬유의 혼방

가) 면과 일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 : 50 으로 하되 등률일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칭을 우선적으로 호칭 한다 (합섬,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 순)

나) 면과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등률일 때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면, 비스코스순 (이는 가격 수준임)에 의하여 호칭 한다.

(2) 모와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비율을 60 (화섬) : 40 (모)로 하고 등률일 때에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나) 모가 40% 미만일 경우로서 모와 이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등률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호칭한다.

(3) 견과 타 섬유의 혼방

가) 기준 중량 비율을 30 (견) : 70 (화섬)으로 하고 등률일 때 견을 택한다.

(가) 전이 30% 미만인 경우에 전과 이중 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비율이 가장 큰 것을 택한다.

(나) 전과 모의 기준 혼방 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률일 때는 견을 택한다.

(4) 이중의 화섬혼방

등분률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택하되 동률일 경우에는 합성 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으로 호칭한다.

다) 면사 생산업체

경성방직 (영등포)	동일방직 (인천, 천안)
전남방직 (광주)	홍한방직 (인천)
합동방직 (대구, 대전)	대한방직 (수원, 대구)
충남방직 (천안)	대능방직 (안양, 청주)
풍한산업 (대전)	일신방직 (광주)
방림방직 (영등포)	삼화방직 (부산)

라) 항목별 유의사항

(1) 면혼방사는 면사에 포함한다.

(2) 화학섬유 방직사는(32164 - 01, -02, -03, -04, -05, -06) 일체의 화학섬유를 방직할 수 있도록 제 공정을 완료한 사(絲)의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임으로 각종 화학섬유(35133)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각종 직물의 단위도 m임으로 필, 마 등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각종 세 폭직물(3217501)은 사용 원재료를 가리지 않고 폭 13cm미만 직물을 전부 포함한다.

(5) 표백, 염색 및 정리업(32180)은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섬유, 직물 등의 표백, 염색, 나염 및 기타 가공에 주로 종사하는 산업으로서 출하품목은 기록하지 않고 수입 수수료를 수탁 제조 및 수입수입액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풀치기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품목 표시를 한다.

개인을 상대로 하는 표백 및 염색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9520에 분류).

(6) 잘포벼지는 지정단위가 m^2 인데 사업체에서 1 Roll로 응답하면 1 Roll = 6.6885 m^2 으로 환산한다.

4)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가) 편직 공장에서 일관작업으로 내의, 장갑, 양말 등을 제조하는 산업은 3213 (편직업)에 분류하고 의복의 수선은 제조업에서 제외한다. (9520에 분류) 다음의 산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메리야스제 내의 편조업 : 32133

편직들 장갑 제조업 : 32132

고무장갑 제조업 : 35593

메리야스제 모자 : 32134

5)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 가죽제품 제조업)

가) 소가죽은 제조과정에 따라 복수혁, 다리혁, 이혁, 저혁으로 분류되나 이것을 모두 포함하여 단일품목으로 조사한다.

나) 사업체에서 소가죽의 단위를 m^2 또는 m^3 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지정단위는 m^2 임으로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단위환산법 (가죽의 경우 #평#은 보통 사용하는 #평#의 크기와는 다르다).

1 평 = 0.093 ㎡

1 매 = 3.7 ㎡ (40 평)

다) 공업용 가죽벨트의 지정단위는 m/ply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체에서 자(尺)나 m를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체에 문의하여 m/ply로 환산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죽가방 제조업에는 플라스틱제를 포함하나 직물제가방은 32121에 분류한다.

6) 소분류 324 (가죽신 제조업)

가) 플라스틱제 신은 35600에 분류한다.

나) 고무신은 35591에 분류한다.

다) 나무제 신은 33199에 분류한다.

7) 소분류 331 (계재, 콜크 및 나무제조업)

가) 판재라 하면 넓이가 두께의 3배 이상이 되는 목재를 말하며 각재란 넓이가 두께의 3배 미만의 것을 말한다.

나) 각재와 판재는 ㎡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1 ㎡ = 426 才

다) 합판 및 하드 보드도 ㎡로 환산기록 하여야 한다.

합판의 경우 : 1 매 = 0.013 ㎡

하드보드 : 1 매 = 0.019 ㎡

8) 소분류 332 (가구 및 전구 제조업)

가) 철제가구 제조업은 381 (금속가구 및 전구제조업)에 분류된다.

나) 나전칠기제 공예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은 39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에 분류된다.

9) 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 창호지 및 벽지(사고지)의 단위는 권이다. 그러나 한 권이 사업체에 따라 100매 또는 1,000매 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권을 2,000매로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나) 골판지의 표면과 이면에 사용되는 라이너(K원지 또는 B원지라고 함)와 가운데 입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는 골판지원지(3411302)에 분류하고 이를 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골판지(3411303)에 분류한다.

다) 잣포벽지는 섬유제조업(3219007)에 분류된다.

10) 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가) 사진복사 및 청사진업(전자복사 포함)은 인쇄출판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34193에 분류함).

나) 자신이 인쇄하지 않고 서적출판만 하는 사업은 완제품출하액 및 위탁생산비(인쇄비 등)을 기록하고 이것을 인쇄한 인쇄업소에서는 수입 수수료만을 수탁제조업 수리수입액에 기입한다.

다) 인쇄소에서 자신이 출판하거나 개인 또는 관공서 등 출판사 이외의 주문에 의하여 인쇄한 것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입한다(수탁 제조업에서 원재료를 모두 조달하여 출판하였을 때는 수탁제조업체의 생산으로 보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쇄시설을 가지지 않은 출판사에서 조사된 것이(나항)인쇄소에서 이종으로 조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조사된 부분은 인쇄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이다.

라) 서적 등의 제본만 하여 주는 사업은 완제품 출하액을 기록하지 말고 수입수수료를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란에 기입한다.

11) 소분류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가) 황산, 염산, 질산, 인산, 가성소다는 함량이 다양하게 생산됨으로 사업체에 문의하여 품목명을 기재한 후 괄호하여 농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예)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도는 황산 (98 % , 35 % , 40 %) 등이 있는데 98 %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염산 (35 % , 100 %) 등이 있는데 35 %로 환산 기재하고 가성소다는 40 % , 46 % , 97 % , 100 % 등이 있는데 100 %로 환산 기입한다.

나) 염료 및 안료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분류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압축산소는 kg 으로 조사하고 사업체에서 본 (本)으로 응답하던 1톤이 7 kg 이니 환산토록 하고 아세치렌가스도 kg 이니 본 또는 kg 은 반드시 kg 으로 환산 기입한다.

라) 합성그리세린 (3511914) 과 그리세린 [유지 분해 부산물 (3523306)] 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세린 (3523306) 은 유지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그리세린 생산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석회질소비료 (3512104) 와 석회질비료 (3512301) 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석회질비료는 소석회 (3692201) 와 구별하여야 한다. 석회질비료와 소석회는 동일성질의 것이나 석회질비료가 소석회 보다 더 굵은 가루임으로 출하량을 구별할 수 있다. 일단 소석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도 석회질 비료로 판매하였을 때는 석회질비료로 조사한다.

사) 각종 수지는 프라스틱 재료제조업 (35131) 에 속하는데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 과 명칭을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의 성질, 제조공정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분류하여야 한다.

아) 화학섬유 (35133 ; 세르로즈 재생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 와 화학섬유 방적업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참조)

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여러 종류의 품목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조사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유산반토 (351807) (Al_2SO_4) 를 생산하는 업체는 보편적으로 유산 (3511101) 를 겸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2) 염산 (3511102) 과 가성소다 (3511108) 는 동일업체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3) 농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겨울철에 유산, 가성소다, 염산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음.

12) 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가) 각종 도료는 필히 품목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유성페인트와 수성페인트를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폭약 및 탄약제조업 (35292) 은 주로 산업용 폭약 및 탄약을 제조하는 산업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성냥 및 화학제조업 (35293) 과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13) 소분류 354 (석유 및 석탄의 잠제품 제조업)

가) 각종 연탄은 (3540101) 반드시 지정단위 %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 : 19 공탄 220 개 = 1 %

31 공탄 180개 = 1 ㄹ

49 공탄 80개 = 1 ㄹ

14) 소분류 355 (고무제품 제조업)

가) 방한화는 운동화에 포함한다.

나) 털신 (고무신안에 털을 넣은것) 은 고무신에 분류한다.

다) 각종 고무벨트의 지정단위는 ply 이다.

사업체에서 자 또는 m 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레 고무호수의 지정단위도 m 임으로 1권으로 보고하더라도 반드시 m 로 환산하여야 한다.

※ 1권은 50척 = 15.15 m

15) 소분류 356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가) 기타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35600)은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제품중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른 산업에서 분류된 것은 아래와 같다.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32129)에 직물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시트 (플라스틱제 포함)

(2) 가죽가방제조업 (32332)에 가죽제품 외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3)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32339)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예 : 지갑 (플라스틱 비닐 및 합성가죽제 포함)

(4) 장난감 제조업 (39098) 에 플라스틱제를 포함한다.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제품 제조업 (39099) 에 비닐우산도 포함시킨다.

16)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 애자는 교압애자 (3,300 V이상) 와 저압애자 (3,300 V이하) 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콘크리트 브릭에서 보도용브릭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다) 벽돌 (소성품) 에 휘장연와 (오지벽돌) 를 포함한다.

17) 소분류 371 (제1차 철강제조업)

가) 1차 금속제조업과 금속제품제조업의 구분

1차 금속제조업은 용광로에서의 제선 (製鐵) 으로부터 압연공장까지와 각종 주물제조를 말하며 금속제품 제조업은 1차 금속제품을 가공 조립하여 최종제품을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단, 도금철판은 1차 철강제조업에 분류하나 도금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381) 에 분류한다.

나) 품목구분

(1) 강판성품 : 강괴는 크고 무거울기 때문에 직접 조강 (鑄鋼) 이나 강판 (鋼板) 등의 강재제품 (鋼材製品) 을 만들기 어려움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형태로 나눈 것이다. 강편 (鋼片) 이라고도 한다.

(2) 후판, 중판, 박판의 구분

후판 : 두께 6mm 이상의 강판

중판 : 두께 3.2 ~ 6mm의 강판

박판 : 두께 3.2mm 이하의 강판

※ 마강판도 두께에 따라 강판에 분류한다.

(3) 가단주철 : 가단 주철이라 함은 가단성 (可鍛性) (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는) 이 있는 쇠를 말하며 ' 금속판 ' 이 음쇠 , 망연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18) 소분류 372 (제 1차 비철금속제조업)

가) 알루미늄 주물 제조업 (37203) 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제품 제조업 [프레스 가공제품 제조업 (38192)] 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루미늄괴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꺼웁고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것으로 양은솔, 두꺼운 주전자 등이며 프레스제품은 알루미늄판을 압축하여 만든 것으로 깨지기 보다는 쪼그러지는 것이다.

19) 소분류 381 (금속제품 제조업)

가) 석유스토브에 석유근로를 포함시켜서는 안되며 구분조사한다.
나) 도금업은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고 도금을 하여주는 사업임으로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은 기록치 않고 수탁제조 및 수리 수입액만 기록한다.
다) 농업용 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 목제농업용 수공구는 제외한다.

20) 소분류 382 (기계제조업)

가) 보일러는 건물용보일러 (3819701) 와 산업용보일러 (3813003) 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나) 발동기는 석유기관 (3821105) 에 포함 조사한다.
다) 탈곡기는 인력 탈곡기와 동력 탈곡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라) 활판인쇄기 (3824906) 음쇄인쇄기 (3824907) 를 엄격히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매) 동력 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 (수리 관계용) 를 포함하

여 조사한다.

배) 재봉틀은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조사하되 재봉틀 등부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사) 피스톤 (389906) 및 피스톤링 (3829911) 과 자동차용 피스톤 (384305) 및 자동차용 피스톤링 (3843222) 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할것.

아) 기계 제조업은 제품의 제조와 수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사한다.

21) 소분류 383 (전기기계 기구 제조업)

가) 축전기는 고압축전기 (3831901 단위 : KVA) 와 저압축전기 (3831902 , 단위 : MF) 로 구분 조사하고 가변축전기 (3831909) , 통신용 축전기 (3832901) (콘덴서) 와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라디오는 가정용, 차량용 등의 용도를 불문하고 진공관식과 트랜지스터식의 것 및 기타의 것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에 착오 없도록 할것.

다) 백열전구란 일반 조명용의 백열전구 (필라멘트 전구) 로서 10 w , 20 w , 30 w , 100 w , 150 w , 200 w 등을 포함한다.

라) 축전지는 기전력이 소멸된 후 다시 충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건전지와 구별되는 것이니 조사에 주의를 요한다.

22) 소분류 384 (수송장비 제조업)

가) 선박 수선업도 제조업 (38412 , 38413) 으로 조사한다.

나) 선박은 지정단위가 G/T임으로 #척#등으로 조사된 것은 사업체에 문의하여 환산한다.

다) 시린머는 기차용 (3842210) 과 자동차용 (3843221) 으로 구분

조사한다.

라)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만 기입한다.

23) 소분류 390 (기타 제조업)

가) 연필단위 환산

12 자루 = 1 타

12 타 = 1 그로스 = 144 자루

나) 월타는 #상자# 등으로 보고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지정 단위 #으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다) 시계조사는 손목시계, 패종시계, 탁상시계, 전자시계, 전기시계로 구분 조사한다.

부록 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표

< 1973년도 >

부록1 주요상품 생산자 판매가격 일람표

(1973년 평균가격)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 (원)
111 농업 및 축산업			
쌀	일반미 중품 도매상인도	80 kg	9,728
낙 화 생	상품 볶은것 "	75 kg	25,622
닭	재래종 암닭 약 1.7 kg 도매상인도	마 리	588
달걀	중품 도매상인도	10 개	148
누에고치	생추잠 4 등급 또는 생추잠 3 등급 농 협 수매	kg	883
면 화 솜	상품	kg	409
염 연 초	황색종 화건 3 등품, 전매청수납	kg	528
210 석 탄 광업			
무 연 탄	석공탄, 3급탄, 분탄 5,300~5,600 Cal	%	3,560
무연피탄	석공 1급탄 5,900~6,200 Cal	"	5,660
조 개 탄	5,700 Cal 이상	"	6,872
230 금속 광업			
철 광 석	56 %	%	3,429
동 광 석	동 12 %	"	22,442
연 광 석	연 60 %	"	46,933
290 비금속 광업			
고 령 토	SK # 34 분홍색	%	2,700
"	SK # 35 백 색	"	4,056
규 사	23목 (目) 이하	"	3,00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천 일 염	1등급 도매상인도	60 kg	784
311 ~ 312 식료품 제조업			
참 기름	상품 용기대 제외	l	1,076
채 종 유	상품 용기대 제외	"	292
미 강 유	식품 용기대 제외	"	207
아마인유		"	266
마아가린	450 g 포장	kg	203
쇼 트 닝	제과용 상자당 4.5 kg	"	280
두 부	목판당 약 1.8 kg	"	67
정 제 염	상품 염도 85 ~ 90 %	"	25
배합사료	성제 산란초기용 단백질 15 % 이상	"	52
당 면	상품	"	206
라 면	개당 120 g 상자당 50개	"	170
설 탕	정백당, 당도 99.9 % 이상	"	160
엿	특급, 용기대포함	"	105
인 조 빙	식용, 개당 300 lb	kg	3,125
된 장	상품, 비닐포장	kg	90
고 추 장	상품, 비닐포장	"	160
313 음료품 제조업			
포 도 주	병당 640 ml, 상자당 24 병 생산자 배달	l	141
맥 주	4도, 양조주 640 ml, 상자당 24 병 "	"	299
탁 주	약 6도, 상품 생산자배달	"	21
약 주	약 11도, 상품, 생산자배달	"	59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청 주	특급청주, 1.8 l 상자당 10 병, 생산자배달	l	371
누 룩	상품	kg	112
백 아	순백	"	104
사 이 타	병당 340 ml, 상자당 24 병, 용기대포함 생산자배달	l	134
쥬 스	병당 190 ml, 상자당 24 병, 용기대포함	"	284
홍 차	봉지당 1.4 g, 상자당 2,700 봉지	"	2,262
321	섬유 제조업		
면 양 말	갑증면사 60수, 100%, 420 g, 공장인도	죽	121
화섬사양말	여름용, 혼방, nylon, 60%, 면(30수) 40%, 420 g 공장인도	"	85
스 타 킹	여자용, nylon, 20 denier, 50%, 40 denier 50%, 10 filament, 생산자배달	"	110
메리야스 등(冬)내외	면사 30수, 유색 180돈 (675g)	매	924
마닐라로프	아리카, 어망용, 6/10" (18 mm)	kg	259
아 마 사	14수, 생산자배달	"	1,014
아브립사	76수 2 합, 백사(白糸)	"	1,198
생 사	21 중, B격(格)	"	8,555
면 복 지	면짜 23수, 36" × 30마	m ²	271
면혼방직물	면 35%, 폴리에스터 65%, 45" × 30 yd	"	200
새 폭 직물	면테이프 50 mm × 25 m 생산자배달	롤(Roll)	350
포리에스터 직 물	포리에스터 75 denier, 밀도 100 × 150, 60" × 30마, 마당 280 g	m ²	74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어 망 사	면 20수 12 합 도매상인도	3.75 kg	4,668
"	나이론 210 D 24 filament		
광 록	면사 16수 비표백 35" × 30 m 도매상인도	필	3,894
모혼 방직물	모 40 % 포리에스터 60 % 60" × 30 yd	"	54,825
322 의복제조업			
남방사쓰	성인용 15 $\frac{1}{2}$ " , 모시 35 % , 포리에스터 65 % 공장인도	매	1,325
잠 바	성인용, 포리에스터 100 %	"	3,100
여자용 부라우스	PC 210, 면 35 % , 포리에스터 65 % , 긴팔 생산자 배달	"	850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가죽제품 제조업			
핸드백	합성인조피 (에나멜제) , 중품	개	5,164
트렁크	비닐레자제, 대형	"	4,556
324 가죽신 제조업			
남자용가죽신	복수 (천연우피)	족	3,853
여자용가죽신	합성인조피 (에나멜)	"	4,040
331 제재, 콜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육송각재	9자	㎍	40,280
육송판재	6자 × 5치 × 5푼	"	43,248
미송각재	12자이내	"	50,032
미송판재	12자이내	"	60,632
나왕각재	만각 (挽角)	"	54,696
나왕판재	7푼 ~ 8푼	"	68,264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소할재나왕	7~9자, 1치5분자 (角)	m ²	49,184
푸로링나왕	9자×3.5치×6분	"	55,120
341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모 조 지	70g/m ² , 4×6판, BSP 78%, 30%, 유광 (有光)	연 (連)	4,676
신문용지	SKP 30%, GP70%, 4×6판	%	93,139
크라프트지	양면, 폭 40", roll형 (80g/m ²)	%	116,975
선 화 지	백색, 4×6판, 지설 100%	연 (500)	1,556
유선하드롱지	크라프트 펄프 80%, 지설 20%	연 (500)	2,533
박 엽 지	연당 6.8kg, 4×6판, BKP 100%	%	203,095
권 련 지	2급지, 27.5mm×5,000mm	롤 (Roll)	1,143
판 지	마나라판지, 4×6판, 300g/m ² , 생산자배달	연 (500)	14,237
골판지원지	파강 (破強) 2.3, 240g/m ²	%	70,708
크라프트자대	시멘트용, 4합, 27.5"×16.5"×3"	매	32
벽 지	필벽지 (正壁紙), 중품, 필당 1.75자×18자	m ²	12
은 박 지	알미늄박지 (모조지 붙은것), 66.5mm×508mm	연	7,000
등사원지	상품, 백색, 기계용, 갑당 100장	갑	1,100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황 산	공업용, 98%, B ₆ 용기계의 생산자배달	kg	16
염 산	공업용 35%, 용기계의 도착역도	"	17
암모니아	공업용 99.8%	"	40
소오다회	중회 99.8%	"	33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산 소	99.8 %, 용기제외, 통당 6,450 l 주입	통	408
메 타 놀	공업용, 98 % 이상	kg	42
무수 푸탈 산	순도 99.8 %	"	127
직접 염료	흑색, 상품	"	990
가성 소 다	공업용 액체 40 %	250 kg	5,354
활성 탄소	탄소 70 % 수분 30 %	%	170,000
포르마 린	37 % 직매점인도	"	30,260
초 산	공업용 42° 수입품 도매상인도	"	80,546
메 타 놀	공업용 98 % 이상	kg	42
크 레 졸	원액 수입품 도매상인도	"	315
스 티 렌	공업용 Monomer 도매상인도	"	152
8 소 비료	질소 46 % 농협창고인도	포대 (25 kg)	968
용 성 인 비	인산 20 % "	kg	11
중 과 석	인산 46 % "	"	22
가 리 비료	염화가리 60 % "	"	12
복 합 비료	질소 22 % 인산 22 %		
	가리 11 % 농협창고인도	"	28
살 충 제	유제	100 cc	123
살 균 제	유제	100 cc	85
제 초 제	입제 PCP 13.4 %		
	MCP 1.2 %	kg	112
산성 염료	10 B, 흑색, 상품, Nylon 사용 (糸用)	"	1,000
염기성 염료	Metylé violet	"	1,275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형광염료	MB, conc, 백색, 상품	kg	725
레이크안료	적색, L. C. I.	"	1,600
아 연 화	특급, 99.5 %	"	271
탄 산칼슘	96 % 경탄	"	27
규산소오다	3호, 용기제외	드 랫	4,853
가 소 제	D. O. P.	kg	198
포리스치렌수지	G. P. grade	"	147
포리에치렌수지	필름용	"	164
포리프로피렌수지	Fiber grade (virgin), filament 용	"	172
P.V.C.수지	P. 1,000	"	141
35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수성페인트	백색, 외부용 A급	l	356
바 니 스	페놀수지, 비휘발분 70 %, 중품	"	240
에 나 멜	백색, 광택, 외부용, 중품	"	356
락 카	백색, A급	"	430
세탁비누	KS표시품, 2호, 백색 350 g	"	38
합성세제	감당 500 g, 가정용, 분말	"	135
그리세린	94 %, 정제	kg	306
다이아미트	니트로그리세린 43 %	상 자 (22.5 kg)	5,755
뇌 관	전기뇌관	3 m	44
초안폭약	니트로 화합물 7 %, 니트로그리세린 5 %	상 자 (22.5 kg)	4,317
도 화 선	제 2종 도화선	m	16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인쇄용잉크	흑색, 활판인쇄용, 중품	kg	263
353	석유 정제업		
부 탄	특수가공연료용, 용기제의	l	33
프 로 판	가정용, 용기제의	"	46
나 프 사	원료용, 도착역인도	"	7
휘 발 유	고급, 옥탄가 95 이상, 용기제의	"	54
"	보통, 옥탄가 86 ~ 94, 용기제의	"	45
젯 트 유	Jet A-1, 용기제의	"	12
등 유	가정용, KSM2613, 용기제의	"	26
용 제	솔벤트, 250 F, 도착역인도	kg	26
경 유	디젤엔진용, KSM 2610, 용기제의	l	21
중 유	연료용, 용기제의	"	13
방카 C 유	연료용, 용기제의	"	8
방카 A 유	선박용, 용기제의	"	14
구 리 스	기계용, Crown grease	can (15.9 kg)	5,490
354	석유 및 석탄의 잡제품 제조업		
연 탄	5,700 cal 기준, 개당 4 kg	%	5,052
아스팔트	AP ⁵ , 용기제의	kg	11
355	고무제품 제조업		
고 무 신	남자용, 백색, 240 mm 이상, 상품	족	142
"	여자용, 백색, 210 mm 이상, 상품	"	126
우 화	남자용, 장화, 흑색, 240 mm 이상, 상품	"	423
평형고무벨트	KS-1 중	ply	16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V형고무벨트	A형, KS 표시품	ply	3
콘베어벨트	KS-2중	"	9
고무호오스	용수용, $\frac{5}{8}$ " × 1 ply	m	55
재생고무	흑색, 상품, 일반고무재생	%	50,819
자동차타이어	8.25" × 20" 12 ply 상품	개	20,601
" 튜브	8.25" × 20" 상품	개	2,522
천연고무	RSS No.1 도매상인도	%	267,431
합성고무	1778 호 또는 1712 호	"	173,431
356	기타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닐레더	0.2 mm × 91.4 cm, 일반레더, 생산자배달	m ²	223
프라스틱 스폰지	10 mm × 1 자 × 1 자	평	11
프라스틱식기	Bucket, 15 l 들어, 생산자배달	개	237
프라스틱샌달	「소프트」, 여자용	켤레	181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가정용도자제품	커피세트 (6개입), 전자저사용품, 생산자배달, 중급품	조	925
애자	고압편애자, 6.9 KV용, 생산자배달	개	200
토기항아리	중품	자리	714
369	기타 광물 제품 제조업		
적벽돌	1등급	매	9
타일	백색, 내장품, 활강, 108 mm × 108 mm (3.6 자), 평당 260장	m ²	654
내화벽돌	SK #34, 보통형	개	55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내화벽돌	SK # 32, 보통형	개	45
레 미 콘	자갈 467, 시멘트 320 kg, W/C 56.3%, 생산자배달 (10 km 이내)	m ²	5,530
흡 관	하수관, 직경 600 mm × 길이 2.5 m, KS 표시 품, 적재 비포함	본	9,401
시멘트벽돌	6 × 10 × 21 cm, 강도 40 kg	매	5
시멘트브로크	8", 강도 40 kg	"	47
"	6", 강도 60 kg	"	34
시멘트기와	흑색 340 mm × 300 mm × 15 mm 강도 80 kg	"	17
콘크리트관	직경 127 mm, 127 mm × 606 mm	본	109
석면스레이트	골판스레이트, 백색, 6 mm × 72.7 cm × 213 cm (장) 소골 7 척	m ²	281
"	망형스레이트, 백색, 40 cm × 40 cm × 48 mm (장) 생산자배달	장	48
371	제 1 차 철강 제조업		
선 철	주물용 1호	%	31,222
강 피	일반구조용	"	39,972
강 관	직경 900 mm, 두께 9 mm, 6 m (상수도)	개	212,713
"	직경 25 mm, 아연도백관 (상수도)	m	288
봉 강	19 mm, 12 mm, 9 mm	%	67,553
중 판	3.2 mm, 3' × 6'	"	73,473
대 강	0.9 mm, 폭 3'	"	91,713
주 철 관	배수관, 4" × 5'	개	1,89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 (원)
아연도칠판	# 31, 파형 (波型)	장	409
주석도칠판	508 mm × 710 mm (708 g), 0.25 mm H. D. (Hot dip timplate)	㎡	210,734
372	제 1 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	99.98 % 이상	g	980
은	99.98 %	"	33
전기 동	99.98 % 이상	kg	733
연 과	99.95 % 이상	"	170
알미늄과	99.7 % 이상	"	287
381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제외)		
면도날	양면 면도날, 고탄소강	개	5
샷터	스프링샷터 (반자동), 설치비포함	형 (1' × 1')	575
알미늄샷쉬	샷쉬 Bar, 70 mm	kg	613
통조림 판	4 호판 (425 cc), 백판 (인쇄 안된것)	개	26
석유 통	백판, 18 l	"	240
드럼 통	윤활유통, 200 l	"	4,389
병마개	클리병마개, 생산자배달	"	1
스테인레스식기	두께 1.5 mm (SUS-27), 주발, 대접, 뚜껑	벌	366
P. C. 강선	7.0 mm	kg	144
못	No. 12, 2"	"	114
와이어로프	12 mm, 6 가닥 × 24 가닥 × 200 m, 생산자배달	환 (Roll)	30,972
"	16 mm, 6 가닥 × 24 가닥 × 200 mm,	"	50,672
바늘	황기침 (황침), 12 gauge	개	5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식유스토오브	난방면적 2~5명	개	9,800
연탄난로	주물제 (22공탄용)	”	1,111
방열기	5 C, 650 mm (높이), KS No. 217 및 374 382 기계 제조업	쪽	1,329
보일러	수관식, 증발량 5,000 kg/h 상용압력 10 kg/cm ² , 생산자배달	대	7,980,000
동력탈곡기	자동식	대	23,000
”	동력식	”	90,000
분무기	등짐형, 공병식, 가솔린, 1~2 HP	”	43,260
양수기	공병식유엔진 5HP 고무호스부	”	26,000
경운기	8 HP, 디젤엔진	”	352,358
”	8 HP, 등유엔진	”	402,734
선반	고속정밀선반 6자, motor부	”	625,000
형삭반	710 mm (ram의 최대행로), 650 × 500 × 450 mm (테이블크기), motor부	”	655,000
보오링반	19 mm (천공능력) 3/4 HP, motor부	”	115,000
프레스기	파워프레스기, 10 T	”	380,000
연사기	100 g용, 200 추, motor부, 2 HP, 견직용	”	380,000
면직기	54", 1 × 1, motor부, 1 HP	”	265,000
견직기	63", 2 × 1, motor부, 1 HP	”	385,000
정미기	본기 (本機) 1호, 소요마력 5 HP	”	10,000
제분기	원기 (原機), 소요마력 5 HP	”	18,75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격(원)
사출성형기	용량 3온스, 사출장치: 부란자, 금형계결 장치: 토글 (toggle) 식, 자동장치: 완전자동	대	850,000
복 사 기	전자복사기	"	480,000
인쇄용기기	활판인쇄기, 체인식, 8 절지, 5 HP, 대형	"	2,300,000
"	활판인쇄기, 체인식, 8 절지, 5 HP 소형	"	160,000
송 풍 기	터보후앵, 4 SS형, 풍량 235 m ³ /min, 풍정압 (風靜壓) 50 mm/Ag	"	150,000
"	다이후앵, # 4 풍량 190 m ³ /min, 풍정압 50 mm/Ag	"	100,000
공기압축기	횡형단기통수병식, 30 HP 공기탱크 및 motor 제외	"	402,222
발 브	BC gate valve 383 전기기기 제조업	개	442
변 압 기	단상 50 KV 3,300 - 6,600 V 공판장인도	대	197,000
망간전전지	DM 1.5V 상품	개	40
전 화 기	체신 1호기 흑색 자동식	대	8,371
적산전력계	단상 2 W 100 V 60 사이클 20 (10 A)	"	2,440
변 압 기	단상 50 KV 3,300 - 6,600 V	"	197,000
전 동 기	10 HP, 220 V, 60 사이클, 1,800 rpm 4극, 반폐형	"	62,500
용 접 기	20 KVA, 10 kw, 240 A, 교류용	"	55,000
정 류 기	0.50 volt, 200 A, 완전 자동	"	400,00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변 성 기	1 FT 10 mm A, B, C, 발진코일, 라디오용	조 (4개)	170
저 항 기	탄소재, 고정저항기 1/2 W	개	4
"	가변저항기, 직경 24 φ, 스윗치 없는것	"	80
레 코 드 판	LP형, A급가수, 국내취입, stereo	매	480
전 기 콘 로	4각형, 600 W, 표면도금, 열조절용 스윗 치부	개	1,000
선 풍 기	12", 40 W, 속도조절장치	대	11,740
냉 장 고	GR-161, 용량 160L, 95 W	"	148,600
필 라 멘 트 전 구	백열 100 V, 30 W ~ 60 W	개	41
형광등관구	FL-20D, K. S. 표시품	"	190
연 축 전 지	승용차용, 2HN 45 AH 12 V	대	5,530
극 판	축전지용, H극판 2 mm	개	50
소 켓 트	Key 소켓트, 6 A	"	50
384	수송용기기 제조업		
버 스	시내버스용, 국산	대	3,840,000
트 렉	화물차, 적재적량 6톤 (6 ton-cargo)	"	2,688,000
"	화물차, 적재적량 7.5톤 (D-750)	"	2,890,000
삼 륜 차	T2000, 81 마력, 12 S, 적재량 2,000 kg	"	1,060,000
자 동 차 비 스톤	코로나 78 mm STD	조	3,800
"	이즈즈 DA-120 100 mm	"	7,200
"	도요다 2-D 105 mm	"	18,250
자 동 차 기 어	Pinion and ring matched gear set GMC용	"	13,000
자 동 차 스프링	Bus용, front assembly	조 (13개)	10,910

품목명	품 질 및 규 격	단 위	가 격(원)
자 전 거	26", 완성차, 전등장치제외, 반케이스체인	대	12,000
모터싸이클	90 cc (CL-90)	"	198,030
385	사전, 과학기기, 과학적계측 및 조정용기기 제조업		
온 도 계	5.5 ~ 6 mm, 길이 30 cm, 알콜한난계 0° ~ 100°C	개	55
텍 시 미 터	크기 125 × 110 × 75 mm, 중량 1.95 kg, 요금 표시용	대	30,000
390	기타 제조업		
배 구 공	경기용, 우피제	개	942
연 필	필기용, HB, 흑심, 지우개 고무붙임, 상품	타	58
울 겐	61 건, 쌍열, 직매접인도	대	50,000
필 터	84 mm, 1000개 들어, 전매청인도	상 자	661

부록 2.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연관표

※ 이용상 유의사항

1. 본 연관표는 광공업부문의 주요 완제품과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광공업부문의 완제품은 약 2,000여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각 품목별 완제품의 산업전반에 대한 생산액의 비중, 전략적으로 중요시 되는 품목, 투입되는 원재료의 산업전반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16개 주요 완제품을 선정하였다.
3. 완제품 품목별로 투입원재료를 구분할 필요가 없거나 구분하기 힘든 15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분류(1개) 또는 소분류(14개)별로 투입원재료를 분류하였다.
4. 투입원재료는 산업전반에 대한 중요성과 각 품목별 완제품 생산을 위한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주요 투입원재료가 가능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선정되었으며 생산공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투입원재료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5.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단위는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동일한 단위로서 사업체의 단위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환산하여야 한다.

부록2 완제품 및 투입원재료의 연관표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1220004	경목	m
			3529205	폭약	kg
대분류 3	제조업				
중분류 31	음식료품및담배제조업				
소분류 311 - 312	식료품제조업				
3112901	조제분유	kg	1112101	원유	kg
			3118102	설탕	"
			1112101	유당	"
			3118301	포도당	"
3115301	마아가린	kg	3115304	경화유	kg
			31151 -	유지	"
			3111301	돈치	kg
			3115199	어유	※
			3115202	콩기름	ℓ
3117102	식빵	kg	3116201	밀가루	※
			3121904	이스트	kg
			3118102	설탕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117303	라 면	kg	3118301	포도당	kg
			3115305	쇼트닝	kg
			3115301	마아가린	kg
			3116201	밀가루	kg
			3115305	쇼트닝	kg
			3115	식용유	l
			3121701	정제염	kg
3118102	정 당	kg	3118101	원당	kg
			2909907	규조토	kg
			3529402	활성탄소	kg
			3121701	정제염	kg
			2904101	생석회	kg
			3412101	지대	개
3121101	인조빙	kg	3511105	암모니아	kg
			3511203	탄산가스	m ³
			2903001	소금	kg
3121303	구루타민산소오다	kg	3118103	당밀	kg
			3121401	전분	kg
			3511102	염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완제품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121401	전분	kg	3511108	가성소다	kg
			3511105	액제암모니아	kg
			1111106	옥수수	kg
			1111105	밀	kg
3122001	배합사료	kg	1111106	옥수수	kg
			1111102	보리	kg
			1111105	밀	kg
3131101	주정 (에칠알콜)	ℓ	1111109	고구마	kg
			3118103	당밀	kg
			11111 -	잡곡	kg
3133001	맥주	ℓ	1111102	보리	kg
			1111415	호프	kg
			31219 -	효모	kg
			3121401	전분	kg
소분류 314	담배제조업		31400 -	잎담배	㎏
			3909903	철타	㎏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중분류 32	섬유의복및가죽공업				
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3216101	면사	kg	1111408	원면	kg
			3216405	포리에스텔 SF	kg
			3216407	P.V.A SF	kg
3216205	소모사	kg	3216202	Raw Wool	kg
			3530201	Spinning oil	"
			35114 -	Acetic Acid	"
3216206	혼방모사	kg	3216202	원모	kg
			3216405	폴리에스텔 SF	kg
			3216405	나이론 SF	kg
			3216405	아크릴 SF	kg
			3216405	비스코즈 SF	kg
			3216407	아세테이트 SF	kg
3216207	방모사	kg	3216203	지부양모 (脂付羊毛)	kg
			3216299	모실	※
32164-	나이론		2101001	석탄	※
			3511101	황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2164 -	비스코스인전사	kg	3511212	카프로락담	kg
			34111 -	펠 프	%
			3511108	가성소다	kg
			3511822	이유화탄소	kg
			3511101	유 산	kg
3216601	면 봉 사	kg	3216101	면 사	kg
			3216405	나이론 SF	kg
			3216405	아크릴 SF	kg
			3216405	비스코스 SF	kg
3217101	광 목	m ²	3216101	면 사	kg
			3216407	P-V-A SF	kg
			3511115	포백분	kg
			35117 -	염 로	kg
			3511108	가성소다	kg
3217107	포 푸 린	m ²	3216101	면 사	kg
			3116201	소 맥 분	kg
			35119 -	화공약품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2173 -	소모직물	m'	(순모의경우)		
			3216205	소모사	kg
			3530201	Spinning oil	"
			35114 -	Acetic Acid	"
			(Tetron소모 복지의경우)		
			3216205	소모사	"
			3216405	Tetron 糸	"
3511713	염료	※			
3217303	모혼방직물	m'	3216207	방모사	kg
			3216405	포리에스텔SF	kg
			3216405	나이론 SF	kg
			3216405	아크릴 SF	kg
			3216405	P. V. A SF	kg
			3216405	폴리프로필렌 SF	kg
			3216405	비스코스인견사	kg
			3216405	아세테이트인견사	kg
32176 -	어망지	kg	3216405	나이론어망사	kg
			3511999	수지가공약품	※
3217602	나이론직물	m'	3216405	NYLON Filament	kg
			3511713	염료(기타)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217603	아세테이트직물	m'	3216407	아세테이트사	kg
			3216405	나이론사	kg
			32164-	비스코스사	kg
3217604	혼방직물	m'	3216202	원모	kg
			3216405	화학섬유사	"
			3216503	인견사	"
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m'	3217-	혼방직물	m'
			32171-	면직물	m'
			3217301	소모직물	m'
			3217302	방모직물	m'
			32176-	화학섬직물	m'
소분류 323	가죽 가죽대용품 및 털가죽제조업	m'	32310-	원피	m'
			3231001	우혁	m'
3231001	소가죽	m'	3231004	우원피	m'
			3511110	소오다회	kg
			3529914	탄당액	kg
			3692201	소석회	Mt
			3511101	황산	kg
			3511816	중크롬산소다	kg
			3511812	유화소다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324	가죽제조업		3231001	우혁	m ²
중분류33	재목 나무제품 및 가구제조업				
소분류331	재목콜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511402	호르마린	kg
			1220099	원목	m ³
			3511401	메타놀	kg
3311201	합판	m ³	12200 -	원목	m ³
			3511918	요소	kg
			3511402	접착제	kg
소분류332	가구및천구제조업		1220099	원목	m ³
중분류34	종이·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업				
소분류341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411101	쇄목 펄프	%	1220005	펄프용원목	m ³
			2904101	석회석	%
			3511101	황산	kg
			3511108	가성소다	kg
			3511208	염소	m ³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411102	화학 펄프	%	3511115	표 백 분	kg
			3511110	소 다 회	kg
			3511812	유 화 소 다	kg
			3523299	제면 활성제	※
3411103	신문 용지	%	3411101	쇄 목 펄프	%
			3411102	화 학 펄프	%
			3411103	지 설 및 고 지	%
			2909201	활 석	%
			3511807	유 산 반 토	kg
			3411301	판 지	%
3419999	인쇄 용지	%	3411101	쇄 목 펄프	%
			3511818	규 산 소 다	kg
			2909202	Talc.	%
			3513199	Resin	※
			34111 -	표 백 펄프	%
			2909202	Talc (활석)	%
			3511811	Alum (명반)	kg
			3529102	Starch(풀)	kg

산업분류 및 주요원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 342	인쇄출판및판련업		3411103	신문용지	%
			3411201	백상지	%
			3419999	인쇄용지	%
			3411206	아트지	%
			3411207	박엽지	%
			3529702	인쇄잉크	kg
중분류 35	화학 석유 석탄 고무및프라스틱제 품 제조업				
소분류 351	공업용 화학제품 제조업				
3511101	황 산	kg	2902005	유 황	%
			2902009	황 화 광 석	%
3511101	유 산	kg	3511808	유 황	kg
3511102	염 산	kg	2903001	소 금	%
3511103	질 산	kg	3511105	암 모 니 아	kg
			3511201	산 소	m ³
3511105	암 모 니 아	kg	3530102	남 사	%
			3530108	방 카 C 유	ℓ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108	가성소오다	kg	2903001	천일염	%
			3511110	소다회	kg
			3511102	염산	kg
3511110	소오다회	kg	2903001	소금	%
			3511105	암모니아	kg
			2904101	석회석	%
			3540901	코크스 고정탄소	%
3511304	벤젠	kg	3530102	나프사	ℓ
3511305	토류엔	kg	3530102	나프사	ℓ
3511306	키질렌	kg	3530102	나프사	ℓ
35114 -	에타놀	kg	3511301	에치렌	kg
3511401	메타놀	kg	3511202	수소	m ³
			3511844	일산화탄소	kg
3511402	호르마린	kg	3530102	납사	%
			3511401	메타놀	kg
3511404	V . C . M	kg	3511301	에치렌	kg
			3511609	E . D . C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405	폴리에치렌	kg	3511301	정제에치렌	kg
			3511201	酸素	kg
3511410	에치렌그리콜	kg	35111 -	차아염소산	kg
			3511301	에치렌	kg
3511506	알킬벤젠	kg	3511302	Propylene Tetramer	kg
			3511304	벤젠	kg
3511508	무수프탈산	kg	3511399	O-Xylene	※
			3511299	N ₂ Gas	※
3511512	카프로락담	※	3511504	싸이크로헥산	kg
			3511505	암모니아	kg
			3511808	유황	kg
35117 -	염료	kg	3511304	벤젠	kg
			3511305	토류엔	"
			3511919	나프타린	"
			3511307	안드라센	"
35117 -	안료색소	kg	3511102	염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1727	무기 안료	kg	3511901	초 산	kg
			3511108	가 성 소 다	"
			3511101	유 산	"
			351111 -	P-chloro-o-Nitroaniline	"
			3511111	Aceto-Acet-o-chloronilide	"
			35111 -	Sodium Dichromate	kg
			3511103	Nitric Acid	"
			3720105	연 과	"
			3511101	유 산	"
			3511110	소 다 회	"
3511801	카 바 이 트	kg	2904101	석 회 석	%
			2101001	무 연 탄	"
			3540901	코 크 스	"
3511905	사 카 린	kg	3511514	O . T . S . A	kg
			3511515	무 수 크 롬 산	"
			3511108	가 성 소 다	"
			3511101	유 산	"

사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12101	요소비료	%	3511101	암모니아	kg
			3511203	탄산가스	m ³
3512104	석회질소비료	%	3511801	분말카바이트	kg
			3511299	질소개스	※
3512106	용성인비	%	2902002	인광석	%
3512201	복합비료	%	3530102	나프사	kg
			2902002	인광석	%
			3511808	유황	kg
			3511832	염화加里	kg
3513102	요소수지	kg	3511918	요소	kg
			3511402	포르마린	kg
			3411199	인건펄프	※
3513103	메라민수지	kg	3513102	요소	kg
			3511105	암모니아	"
3513111	P.V.C	kg	3511404	V.C.M	kg
			3511801	카바이트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 칭	단위	품목번호	원 재료 명	단위
3513201	S . B . R	%	3511202	수 소	kg
			3511208	염 소	m ³
			3529402	활 성 탄	kg
			35409 -	Butadiene	%
			35409 -	Styrene	%
			35299 -	공 업 용 염	%
			3511108	가 성 소 다	%
3513301	비스코스레이온섬유	kg	3411101	펄 프	%
			3511108	가 성 소 다	%
			3511822	이 유 화 탄 소	kg
			3511101	유 산	kg
3513302	아세테이트레이온 섬유	kg	35133 -	아 세 테 이 트	kg
			3511601	아 세 톤	kg
3513303	폴리에스텔	kg	3511509	P . M . T	kg
			3511410	에치렌그리콜	kg
			3511105	암 모 니 아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352 35231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비 누	kg	3115101	우 지	kg
			3115299	야 자 유	※
			3511108	가 성 소 다	kg
			3511814	탄 산 소 다	•
			3511818	규 산 소 다	•
			3523306	그 리 세 린	•
			35233 -	향 료	•
			3511110	소 다 회	•
3523201	합 성 세 제	kg	3511304	알 킬 벤 젠	kg
			3511108	가 성 소 다	•
			3511105	수 산 화 암 모 늄	•
			3511810	무 수 망 초	•
			3511818	규 산 소 다	•
			3511814	탄 산 소 다	•
			3511104	인 산 염	•
3523306	그 리 세 린	kg	3511101	유 산	kg
			3692201	소 석 회	※
3529201	다이 나 마 이 트	kg	3523306	그 리 세 린	kg
			3511901	초 산	kg

사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29301	성냥	1000갑	3511101	유 산	kg
			3512112	초 안	kg
			3511918	요 소	kg
			3121401	전 분	kg
			3511803	적 린	kg
			3530901	파 라 편	kg
			3511832	염 소 산 칼 리	kg
			3511816	중 크 롬 산	kg
			3511824	이 산 화 망 간	kg
			3511726	산 화 철	kg
3529401	카본블랙	kg	3620402	유 리 가 루	※
			2101001	석 탄 개 스	kg
			3511204	아 세 치 렌	m ³
			3530105	석 유	ℓ
			3530102	납 사	ℓ
소분류353 35301-	석유정제업 석유제품	ℓ	2210001	원 유	ℓ
			2210001	원 유	ℓ
			3511916	스 테 아 린 산	kg
			3529501	몬 탄 왁 스	kg
			3529917	지 방 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원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30201	윤활유	ℓ	3511101	유산	kg
			2902012	백토	㎏
			3511108	수산화나트륨	kg
			2210001	원유	ℓ
			2904202	백토	㎏
소분류354 35409 -	석유및석탄의잡제품 D. M. T	kg	3692201	소석회	㎏
			2909907	규조토	㎏
			3511101	유산	kg
			2101001	무연탄	㎏
			35111 -	Telephthalic Acid	kg
소분류355	고무제품제조업		3511401	메타놀	kg
			35118 -	硫酸	kg
			3216101	면사	kg
			3559908	생고무	㎏
			3513299	합성고무	㎏
35511 -	타이어	본	32164 -	화학섬유사	kg
			3529401	카본블랙	kg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511-	튜브	본	3529401	카본블랙	kg
			3511903	노화방지제	kg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3513201	부틸고무	kg
35591-	고무신 및 운동화	족	3529401	카본블랙	kg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3559501	재생고무	kg
			3511715	아연화	kg
			3511808	유황	kg
			32171 -	면직물	m ²
			32176 -	합성섬유직물	m ²
35592-	각종 고무벨트	ply	3559908	생고무	kg
			3513201	합성고무	kg
			321 -	범포지	m ²
			3529401	카본블랙	kg
			3559501	재생고무	kg
			3216101	면사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 356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513108	폴리에치렌	kg
			3511408	폴리프로피렌	kg
			3513110	폴리스치렌	kg
중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3513111	P. V. C	kg
소분류 361	도자기 및 점토제품 제조업		2901201	점 토	※
			2904201	고령 토	※
			2904301	장 석	※
			2904402	규사 및 규석	※
			2909908	석 고	※
3610101	도 자 기	※	2904202	백 토	※
			2901201	점 토	※
			2904301	장 석	※
			2909903	규 석	※
36102 -	애 자 개		2904202	백 토	※
			2909903	규 석	※
			2904301	장 석	※
			2901201	점 토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610901	위생도기 ※		2904201	고령토	%
			2901201	점토	※
			2909903	규석	%
소분류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904101	석회석	%
			2904301	장석	%
			2909903	규사 및 규석	%
			29099 -	총석	%
			2909301	형석	%
			3620101	관유리 상자	2904401
			2904101	석회석	%
			2909904	백운석	%
			3511110	소다회	kg
			3511809	망초	kg
			3511924	아비산	kg
			3620402	유리 및 유리설	※
			소분류 369	기타광물제품제조업	
36913 -	타일	㎡	2904301	장석	%
			2902012	백토	%
			2901201	점토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692101	시멘트 및 크링카	%	2909201	납 석	%
			2904101	석 회 석	%
			23010 -	철 광 석	%
			3692302	석 고	kg
			3412101	지 대	개
3699205	석 먼 스투트	%	3692101	시 멘 트	%
			3699603	석 먼	kg
			34111 -	팔 프	%
중분류37	제1차 철강제조업				
소분류371	제1차 철강제조업				
3710101	선 철	%	23010 -	철 광 석	%
			3540901	코 크 스	%
			2904101	석 회 석	%
			3710905	고철 및 철 설	%
			2909301	형 석	%
			2909201	납 석	%
			2302201	망 강 광 석	%
2904401	규사 및 규사석	※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710102	강괴	%	3710101	선철	%
			3710905	고철 및 철설	%
			2904101	석회석	%
			2909301	형석	%
37102 -	형강 및 강반성품	%	3710102	강괴	%
			3710104	강반성품	%
37102 -	특수강	%	3710905	고철	%
			3720108	망간괴	kg
			3691403	내화물	%
			3692202	생석회	%
			2904101	석회석	%
3710207	선재	%	2909301	형석	%
			3710102	강괴	%
소분류 372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3720104	동괴 및 전기동	kg	2302401	동광석	%
			2904101	석회석	%
			3511101	황산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720105	연 피	kg	3540901	코 크 스	%
			2302911	연 광 석	%
			2904101	석 회 석	%
			3710905	고 철	%
			3720106	아 연 피	%
			3540901	코 크 스	%
			3511101	유 산	kg
3720106	아 연 피	kg	2302501	아 연 광	%
			2101001	석 탄	%
			3540901	코 크 스	%
3720109	알 미 늄 피	kg	2302901	보오키사이트	%
			3511108	가 성 소 다	kg
3720201	구 리 판 및 관	kg	3720104	동 피	kg
			3720103	진 유 피	kg
			3720106	아 연 피	kg
			3720108	망 간 피	kg
			35118 -	인	kg
3530901	파 라 편	%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720203	알미늄판	kg	3720109	알미늄피	kg
			3720301	알미늄주물	kg
중분류 38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소분류 381	금속제품제조업 (기계및장비제외)				
3813003	보일러	대	37102	철	kg
			3710201	파이프	kg
			3691499	내화물연화	kg
			38197	버너	개
			38311	모타	(마력)
3819506	와이어로프	kg	3710207	와이어로드	kg
			3530202	그리스	kg
			3530107	경유	ℓ
			3530109	방커오유	ℓ
			3720106	아연피	kg
			3720105	연피	kg
			3511712	염산	kg
3819601	기계나사 (볼트 나트)	kg	3710202	판강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소분류 382 3821103	일반기계제조업 디젤기관	대	3530109	방카 C 유	ℓ
			3540901	코크스	ℓ
			3819505	용접봉	kg
			35210 -	페인트	ℓ
			3710203	육각강	ℓ
			3710302	주철	ℓ
			3710903	만강	ℓ
			3710204	기계구조용탄소강	ℓ
			3720104	황동	kg
			3720201	동판	kg
			37101 -	Stainless 봉	ℓ
			37102 -	철판	ℓ
			3720201	동판	kg
3710201	강판	ℓ			
3822002	동력탈목기	대	3311107	목재	※
			37102 -	철판	ℓ
			3843299	베어링	※
			3710199	철강	※
			3819405	철선	kg

산업분류 및 주요 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823204	압축기	대	3710302	주철	주물	kg
			3720104	봉	동	kg
			37102 -	강	판	kg
			38311 -	모	타 (마력)	HP
			3829902	베아링	kg	
3825004	복사기	대	38392 -	수은	등	개
			3829999	스퀴즈	로라	※
			3839903	스위	치	개
			38311 -	모	타 (마력)	HP
			3819706	히터	터	개
			3832901	콘	벤서	kg
			3842210	시	린더	대
			3233101	벨트	ply	
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831102	전동기 (마력)	대	3720201	규소	동판	kg
			3839999	전	기동	※
			3829902	베아링	kg	
			3720109	알미늄	피	kg
			3710199	철	강재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831201	변압기	K.V.A	3720201	규소동판	kg
			3839999	전기동	※
			36102 -	특고애자	개
3831904	전기용접기	대	3720201	규소동판	※
			3720104	동	kg
			381	기타철재	※
3831907	정류기		37102 -	규소강판	※
			37102 -	철판	※
			3720201	동판	※
			3832409	트랜지스터	개
			3832901	콘덴서	개
			3710302	주철물	※
3832411	계전기 및 계측기	대	3720201	규소강판	※
			3710212	대(帶鋼)	※
			3720109	알미늄	※
			3530201	특수윤활유	ℓ
3839103	합성수지절연전선	kg	3720104	동피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839105	전력케이블	kg	3819406	선	kg
			3513108	포리에치렌수지	kg
			3513111	P.V.C수지	kg
			3513201	합성 고무	kg
			3720104	동 피	kg
			3819406	동 선	kg
			3513108	포리에치렌수지	kg
			3513111	P.V.C수지	kg
3839106	통신용케이블	kg	3720105	연 피	kg
			3720109	알미늄 피	kg
3839301	축전지	개	3511101	황 산	kg
			3720105	연 피	kg
			3720207	극 판	kg
			2302910	안티몬	※
			3530902	핏 치	※
			3529401	카본블랙	kg
3839401	건전지	개	3720207	아연판및선	kg
			3720108	망강피	kg

산업분류 및 주요완제품			주요 투입 원재료		
분류번호	명칭	단위	품목번호	원재료명	단위
			3529401	카본블랙	kg
			3710902	석도철판	%
			3699901	탄소분	kg
			2101001	무연탄	%

부록 3. 도량형 단위 환산표

부록2 도량형 단위 환산표

길 이

척(尺)	정(町)	리(里)	미(米)	촌(寸)	척(尺)	마(碼)	리(哩)
1	0.00277	0.000077	0.30303	11.9305	0.99421	0.331403	0.000188
360	1	0.02777	109.09	4,294.99	357.916	119.306	0.067784
12,960	36	1	3,927.27	154,619	12,884.9	4,394.99	2.44033
3.3	0.009166	0.000254	1	39.3707	3.28089	1.09963	0.000621
0.088818	0.00232	0.000006	0.025999	1	0.08333	0.27777	0.000015
1.00582	0.02793	0.000232	0.304974	12	1	0.33333	0.000189
3.01746	0.008381	0.000232	0.914389	36	3	1	0.000568
5,310.73	14,000.00	0.409779	1,609.31	63,360	5,280	1,760	1

중 량

돈(鎊)	관(貫)	근(斤)	그램(g)	온스(oz)	파운드(lbs)	돈(鎊)
1	0.001	0.0625	3.75	0.132277	0.088267	0.000004
1,000	1	6.25	3,750	132.277	8,267.32	0.004133
160	0.16	1	600	21.1641	1,322.77	0.00059
2,266.66	0.00266	0.001666	1	0.035273	0.002204	0.000009
7.55984	0.00759	0.04749	28.3495	1	0.0625	0.000027
120.999	0.120999	1,493.41	483.592	16	1	0.000466
270.946	270.946	1,993.41	1,916.047	35.840	2,240	1
241.916	241.916	1,511.97	907.178	32.000	2,000	0.892857

용 처

	홉(合)	승(昇)	두(斗)	석(石)	입방미(坪)	리터(ℓ)	개롱(英)	개롱(米)
홉(合)	1	0.1	0.01	0.001	0.0018	0.18039	0.039682	0.047659
승(昇)	10	1	0.1	0.01	0.001803	1.8039	0.396185	0.476567
두(斗)	100	10	1	0.1	0.018039	18.039	3.96185	4.76567
석(石)	1,000	100	10	1	0.18039	180.39	39.6185	47.6567
입방미(坪)	5,543.52	554.352	55.4352	5.54352	1	1,000	219.975	264.186
리터(ℓ)	5,543.52	0.55435	0.05543	0.00554	0.001	1	0.219975	0.264186
개롱(英)	25,206	2,520.6	0.25206	0.0252	0.004545	4.54596	1	1.201
개롱(米)	20,983	2,098.3	0.20983	0.02098	0.003785	3.78543	0.832699	1

광 공 업 선 서 스 조 사 표 (I)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한설년	조직형태	자본계층
지/4-05	5	☆	☆	☆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 한국 XX 주식회사 부산공장

대표자명: 홍길동 (전화 4391)

서울특별시 영도시 동삼동 501번지 10호 리 (9동 2반)

2. 본사명 및 소재지

본사명: 한국 XX 주식회사

대표자명: 홍길동 (전화 624321)

서울특별시 영도시 황정동 56번지 2호 리 (9동 4반)

7. 종업원수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는 상용, 임시 및 일고 종업원과 별가자, 단기휴가자 및 피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3.6.9.12월 가운데 휴업한 월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 표시를 한다.)

구	분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2) 피고용자	① 생산종업원	1234	1011	862	938	106	832		
	② 사무 및 기타종업원	207	311	494	399	48	157		
합	계	1441	1322	1356	1337	154	1583		

8. 월별 조업일수

○ 조업일수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실제로 작업한 날을 말한다.
○ 휴업중이 아니더라도 기계고장, 경전등으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날은 제외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5	26	29	28	24	30	30	24	27	28	25	24	320

9. 연간 급여액

(1973. 1. 1~12. 31)

○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현물로 지급한 것과 미분액을 포함한다. (임금, 봉급, 수당 및 상여금, 생계보조금등)
○ 퇴직위로금과 장기 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한다.

(1) 생산종업원				(2) 사무 및 기타 종업원				(3) 합계 [(1)+(2)]									
백의	십의	천의	만원	백의	십의	천의	만원	백의	십의	천의	만원	백의	십의	천의	만원		
	3	1	7	4	4	0	8	1	5	1	0	3	9	8	9	5	0

10. 연간출하액 및 기타수입액

(1973. 1. 1~12. 31)

○ 원제품 출하액은 직접생산한 원제품과 위탁생산한 원제품 중에서 1973년안에 출하한 것을 기입한다. (희상판매, 견본 및 선물용, 사무용품 급여용, 동일기업내의 타사업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도 포함)
○ 원제품 출하액은 13의 (1) 품목별 원제품 출하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백의				십의				천의				만원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1) 원 제품 출 하 액			3	5	1	9												
(2) 폐 품 관 매 액										2	0	0						
(3)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										1	3	1	1					
합	계		3	5	3	4				2	3	1	1					

11. 연초·연말 재고액

○ 연초재고액은 1973. 1. 1 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3. 12. 31 현재로 소재 장소에 관계없이 사업체 소유 재고품 전부를 장부가격으로 기입한다.
○ 위탁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은 포함하고 수탁생산으로 인한 재고품은 제외한다.
○ 원제품의 재고액은 13의 (2), (3)의 합계와, 원재료의 재고액은 14의 (2), (3)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백의	십의	천의	만원	백의	십의	천의	만원						
① 원 제 품			1	9	1	4	9	3		2	2	2	7	8	2
② 반제품 및 재공품				9	2	8	2	4		1	3	5	8	9	0
③ 원 재 료			2	6	9	4	1	9		4	0	1	1	1	0
④ 연 료			1	0	0	0	9	0		2	0	0	4	0	0
합	계		1	5	3	8	7	6		9	6	0	1	8	2

12. 연간주요생산비

(1973. 1. 1~12. 31)

○ 1973년간 생산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비용중(인건비를 제외한 주요 생산비)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자가생산된 중간제품을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최초의 원재료만 기입한다.
○ 원재료비는 14의 (1)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구	분	백의				십의				천의				만원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백	십	천	만	
(1) 원 재 료 비				2	8	6	6											
(2) 연 료 비	가열로용, 동력용 및 자가발전용으로 사용한 연료를 말한다.	① 석탄류	M/T	6552														
		② 유 류	ℓ	3162277														
		③ 기타연료																
(3) 구입 전력비									1,000									
(4) 구입용수비																		
(5) 위탁생산비																		
(6) 수리유지비																		
합	계			3	0	0	8	1										

25 (단) ...

3. 완제품 출하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별제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출하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힘든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단위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명기한다.

○ 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합계는 10의(1)과, 품목별 완제품 연초·연말 재고액 합계는 11의(2)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완 제 품 명	☆	단 위	(1)품목별 완제품 출하액						(2)품목별 완제품 연초 재고액						(3)품목별 완제품 연말 재고액																			
					수	량	백	십	억	천	만	십	만	천	수	량	백	십	억	천	만	십	만	천	수	량	백	십	억	천	만	십	만	천		
①	3216101	면 사		kg	3,065	650		1	8	3	2	8	2	5	200	477			5	9	6	7	8	82	262					4	0	1	7	8		
②	3217114	면 분방 직물		m ²	89,167	200		1	6	6	1	6	7	9	51	077			1	3	0	9	6	7	21	742			1	7	2	2	8	8		
③	3217104	기 라 의 면 조포		m ²	189	560									24	853							8	4	10	088					1	0	3	1	5	
④																																				
⑤																																				
⑥																																				
⑦																																				
⑧																																				
합 계						92432410			3	5	1	9	1	5	276	407			1	9	1	4	9	3	114	192					2	2	2	7	0	2

4.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액의 품목별 내역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별제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 생산된 완제품과 투입된 원재료의 연관성에 유의하여 기입한다.

○ 분류표에 없거나 구분하기 힘든 품목은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수량 단위로 기입하고 적요란에 명기한다.

○ 구입사용한 원재료가 수입품이면 ③에 국산품이면 ②에 표시한다.

○ 사용액이 큰 품목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수입품과 국산품이 혼합된 품목은 '원료번호를 달리하여 출을 바꾸어 기입)

○ 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합계는 12의(1)과, 품목별 원재료 연초·연말 재고액 합계는 11의(3)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일련 번호	품목분류번호	원 재 료 명	구 분	☆	단 위	(1)품목별 원재료 사용액						(2)품목별 원재료 연초 재고액						(3)품목별 원재료 연말 재고액																		
						수	량	백	십	억	천	만	십	만	천	수	량	백	십	억	천	만	십	만	천	수	량	백	십	억	천	만	십	만	천	
①	111408	면 분	①	?	kg	8529	196			8	0	3	1	6	5	512	796			6	3	0	7	4	832	528			1	0	2	4	0	1		
②	3216405	코리미스탈 SF	①	?	kg	1121	533			6	1	0	0	2	0	134	766			7	2	1	0	0	130	841			7	0	0	0	0			
③	3216407	P. V. A SF	1	②	kg	1619	514			6	1	0	0	0	0	166	089			4	1	0	2	4	281	668			6	4	6	3	2			
④	3216202	면 모	1	③	kg	2,809	714			4	0	0	0	2	0	486	867			5	1	1	0	0	478	285			5	0	0	1	0			
⑤	3216405	화학 섬유사	1	②	kg	403	120			3	1	0	0	0	0	41	613			3	2	0	0	1	514	138			5	4	0	3	7			
⑥	3216503	면 직사	1	②	kg	118	444			1	0	3	0	0	0	14	567			1	0	1	1	0	86	469			6	0	0	1	0			
⑦	3217114	기라 의 면직물	1	⑤	kg					3	0	0	2	0									1													
⑧			1	2																																
⑨			1	2																																
⑩			1	2																																
⑪			1	2																																
⑫			1	2																																
⑬			1	2																																
⑭			1	2																																
⑮			1	2																																
⑯			1	2																																
⑰			1	2																																
⑱			1	2																																
합 계							13632091			2	8	6	6	2	2	5			2	6	9	4	1	9	365	8927			4	0	1	1	1	0		

5. 동력시설

- 수리중인 것과 미사용을 포함하여 1973. 12. 31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동력시설의 능력을 기입한다.
- 건물기에는 사무용 기계나 실내장치에 부착된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에는 차량용과 선박용을 제외한다.

(1)전 동 기		(2)원 동 기		(3)자 가 발 전 능 력		
위	설	단	위	단	위	
십	만	단	위	단	위	
백	십	만	단	단	단	
억	억	천	천	천	천	
원	원	원	원	원	원	
7	0	0	HP	8	2	0
						KW
						/
						2
						5
						0

16. 건설가계정

- 건설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 증감액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연간증감[(1)-(2)]							
십	억	천	만	십	억	천	만	십	억	천	만	십	억	천	만
5	2	0	0	0	2	2	0	0	0	0	0	3	0	0	0

17. 조사표 작성근거

- 출하액 및 재고액과 제18항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해당 () 안에 표시한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출하액 및 재고액		(2)유형고정 자산	
①	②	①	②
장	부	장	부
()	()	()	()
②	일부	②	일부
()	추정	()	추정
③	기	③	기
()	추	()	추
	정		정

18/B. 유형 고정 자산
(개인 사업체용)

- 본란은 제17항 (2)란에서 ② 또는 ③에 ○표한 모든사업체에 해당된다.
- 자산분류(4. 기계 및 장치), (5. 공구, 가구 및 비품), (6. 차량, 선박 및 운반구)에는 가격이 큰 자산부터 자산명, 수량 및 금액순으로 기입하고 나머지는 합산하여 기타란에 기입한다.
- (2)란의 신품에는 모든 수입품(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과 증, 개축액을 포함한다.
- (3)사업목적에 사용되는 비품에는 해당 유형고정자산이 생산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비품을 예분종로 표시한다.
- (1)소유관계 및 (2)신·중고 구분은 해당번호에 ○표한다. (예: 토지는 중고품으로서 2에 ○표)
- 해당사항이 없는 난에는 사선 (/)으로 표시한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창설년	조직형태	자본계
2114	12	☆	☆	☆	☆	☆

자산분류	수량	(1)소유		(2)취득시기		(3)사업목적에 사용되른 비율	(4)1973년말 현재 총평가액 (현시가)												
		소유	차용	취득시기	신·중고 구분		연간 취득액						연간 처분액						
							신	중	고	품	신	중	고	품					
100 토지	900 평	①	2	1965년	1	2	100%												
200 건물 (부속시설포함)																			
210 1층건·식조 및 원골조	1동 100평	①	2	1966년	①	2	100%												
220 간토박·목조 및 목골조	동, 평	1	2	19년	1	2	%												
300 건축물	2건	①	2	1962년	①	2	%												
400 기계 및 장치																			
① 선박	2대	①	2	1962년	①	2	100%												
② 프레스기	2대	①	2	1967년	1	②	9%												
③ 가스용접기	2대	①	2	1968년	①	2	9%												
④ 전동기	1대	①	2	1968년	1	②	9%												
⑤ 합축기	1대	①	2	1969년	①	2	5%												
500 기타	2건																		
600 공구·가구 및 비품																			
① 특수강절삭공구	20개	①	2	1966년	①	2	100%												
② 현수공구	10개	①	2	1968년	1	②	5%												
③ 캐비넷	3개	①	2	1970년	①	2	4%												
④ 습고	2개	①	2	1970년	①	2	4%												
⑤ 의자	5개	①	2	1970년	①	2	7%												
690 기타	3건																		
700 차량·선박 및 운반구																			
①		1	2	19년	1	2	%												
②		1	2	19년	1	2	%												
③		1	2	19년	1	2	%												
770 기타	건																		
800 합계							100%												

※ 자산분류

- 토지**
공장 및 사무소의 대지(空地) 사택대지(住宅空地) 운동장등을 말하며 이를 한 토지개량비(정차 매축(埋築) 등의 공사비 및 수익자부담금)등도 포함한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토지는 제외한다.
- 건물(건물부속설비 포함)**
사람들이 거주 사용등의 목적으로 건축한 것과 건물사용의 필요상 또는 사용을 리하게할 목적으로 건물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예: 공장, 사무소, 사택, 가축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昇降機), 방방장치, 명장치등 부속설비.
- 구축물**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예: 도로, 철도, 정차장(停車場) 설비등 교통시설, 발전 및 송배전시설, 저지, 상하수도, 수조(水槽)탱크, 갱도(坑道) 등
- 기계 및 장비**
동력기계, 제조 또는 가공기계와 반사로(反射炉) 가열로(加熱炉) 분류립(分搭) 및 전도장치(伝導裝置) 등을 포함한다.
예: 보일러, 선반, 직기, 여과기, 콤팩터, 콤페어, 전동기, 인쇄기계, 제기등 각종 동력기계 제조 및 가공기계
- 공구·가구 및 비품**
공구란 기계 또는 수공예 의하여서 직접 물건을 제작 또는 가공하는작업에 사용되는 용구를 말하고, 가구 및 비품은 공구 이외의 용구품(用具品)을 말한다.
예: 재봉틀, 활자, 컷터(절단기) 전기드릴, 만력(만리끼) 오스타(흡파는것) 열장, 실내장식품, 의류용구, 캐비넷, 금고, 책상, 의자 등
- 차량, 선박 및 운반구**
이동하는 모든 운반기관(運搬機關) 및 운반용구를 말하며 통상 필요한 범위 부속물을 포함한다.
예: 철도차량,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선박, 자전거, 리아카: 각종운반구

적요: 구분이 힘든 품목명, 사업체 사용단위, 유고사유,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입한다.
장부가 있지만 단가에 중한 장부이기 때문에 분량으로 라속함. 토지등 자산에 대하여 수량에 취득가의 단가를 참조하고 현재시가를 참조하여 수량 x 단가(시가) 하여 과액 한것임. 30년도에 자산 재평가에 과액함.

①작성년월일	②응답자소속	③응답자성명	④조사원성명	⑤지도원성명
1974년 4월 5일	조부	손오봉	홍길동	김삿갓

1. 본 조사표는 조사표(1)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실사과정에서부터 조사표 제출 및 심사과정까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조사표 우측 상단의 「조사구번호」와 「조사표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란은 제외)

18(A) 유형 고정자산
(법인사업비용)

- 본란은 제17항 (2)항에서 (1)에 (3)항 또는 시정제에 해당한다.
- 자산분류 「3. 건물부속설비」는 장부상 구분의 곤란한 경우 「2. 건물」에 포함한다.
- (2)란의 신품에는 모든 수입품 (외국으로부터 수입 수입한 중고수입품 포함)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 (3)연도별 순자산 기록에서 연간처분액이 연간취득액보다 많을 경우 「△」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 (5)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에는 1965년 1월 1일까지 지분의 재평가 결과환 기입한다.
- 1973년 및 1968년말 현재 총평가액은 연말현재로 기입하되 작성이 곤란한 경우 동회기 연도말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년에는 사선 (/)으로 표시한다.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제번호	산업분류	창 설 년	조직형태	자본계종
2114	5	☆	☆	☆	☆	☆

5700

자산분류	(1)1973년말 현재총평가액	(2)1973년 유형 고정 자산 취득액 및 처분액														(3)연도별 순자산취득액(연간취득액-연간처분액)								(4)1968년말 현재 총평가액	(5)1966년 자산재평가시 유형 고정 자산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취득액 상가액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재평가직전 기말잔고	재평가직후 기말잔고						
		신 품			중 고 품				신 품			중 고 품																
		액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종													
1. 토 지	8,970명						2,520명							1,320명						520명	170명	780명	100명	12,840명	9,020	10,970		
2. 건 물	1,1940						5,040						2,640						1,040	1,340	1,480	2,010	12,840	9,020	10,970			
①철근석조 및 철골조	3,200.00						5,000						8,000						2,000	900	2,900	800	2,000.00	1,8290	1,9290			
②토벽·목조 및 목골조	3,200.00						5,000						8,000						2,000	900	2,900	800	2,000.00	1,8290	1,9290			
3. 건 물 부 속 설 비	122.10						20.50						10.00						21.00	1400	2220	1200	6230	5620	5980			
4. 구 축 물	7520						1240						800						520	950	100	200	5241	4800	4990			
①자가발전 및 급수시설	9000						800						700						220	600	300	100	5241	4800	4990			
②교통신설 및 기타	520						440						100						300	2140	900	100						
5. 기 계 및 장 치	99340																		7523	9650	2000	5000	91230	79654	81223			
6. 공 구 · 기 구 및 비 품	7010.5																			800		300.00	42000	41000	40000			
7. 차 량 및 운 반 구																												
8. 선 박																												
합 계	1,240,15						1,5290						100,40						1,050	1,383	1,2940	7080	1,040,00	1,337,41	1,214,44	1,254,33		

주 의 1. 본조사표는 조사표 [I]에 계속되는 것이므로 실시과정에서부터 조사표 제출 및 심사과정까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본 조사표 우측상단의 「조사구번호」와 「조사표번호」를 반드시 기입한다 (☆란은 제외).

1973년 광 공 업 센 서 스 조 사 표 (Ⅱ)

(본 사 · 본 점 조 사 용)

통계법의 규정 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
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만 사용하
며 그 미결은 절대 보장됩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 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조직형태	창 설 년	자본계종
112-07	3					

<p>1.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p> <p>본사명: 한국 X X 주식회사 대표자명: 홍길등 전화번호: 83. 4321</p> <p>영등포구 양정로 56-21호 (9동4반) 부산직할시 신동 56-21호 부산직할시 신동 56-21호</p>	<p>2. 창설년월일 1949년 4월 24일</p> <p>3. 조직형태 해당란에 O표 (1)주식회사(O) (2)기타법인() (3)개 인()</p> <p>4. 자본금 또는 출자금 백만원의 천만백만원 천원 법인에 한하여 1973.12.31년 재 분입이 완료된 금액 3580000</p>
---	--

5. 종업원수 및 연간급여액 (본사·본점분에만한함)

○ 사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자를 말한다.
○ 피고용자에는 상용, 임시 및 일고종업원과 별자, 단기휴가자 및 파업중인 자도 포함하되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는 제외한다. (휴업한 날에는 피고용자수 앞에 △표시를 한다).
○ 연간 급여액에는 피고용자에게 연간 지급한 모든 급여액으로서 원봉급 지급한 것과 미분액을 포함한다. (퇴직위로금과 장기결근자 및 군복무자에게 지급한 것은 제외).

구 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간급여액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1)사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3	2	2	3	2	2	3	2	2	3	2	2			
(2) 피 고 용 자	160	158	162	157	120	37	10	4	129						
합 계	163	160	164	160	122	38	10	4	129						

6.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 (본사·본점분에만한함)

○ 본사 계정에 속하는 원재료 및 연료의 연초·연말 재고액을 기입한다.
○ 연초 재고액은 1973.1.1현재로, 연말재고액은 1973.12.31현재로 기입한다.
○ 꺾은 장부가격에 의하거나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는 작각 시가로 평가한다.

구 분	(1) 연 초 재 고 액						(2) 연 말 재 고 액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① 원 재 료				2	4	21				2	1	00
② 연 료				1	2	10				1	3	01
합 계				3	6	31				3	4	01

주(註)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7. 관할 사업체명부

○ 1973.12.31현재 본사(본점)에 속하는 모든 사업체를 기입한다.
○ 경제활동구분란에는 사업체의 해당 경제활동에 O표 한다.
○ 광공업 또는 광공업과 비(非)광공업과의 결합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주요생산품명을 기입한다.
○ 비광공업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해당 경제활동의 내용을 기입한다. (도매업, 무역업, 건설업등)

사 업 체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종업원 수	경제활동구분			비 고
					광공업	결업	기타	
① 한국 X X 주식회사 부산공장	박 X X	23. 4391	부산서영동구삼동51번지	170	0			
② 한국 X X 주식회사 대구공장	김 X X	24. 2102	대구서영동3가동223번지	200	0			
③ 한국 X X 주식회사 인천공장	이 X X	X-2100	인천서도원동 111번지0호	160		0		분리
④ 한국 X X 주식회사 대전지점	전 X X	3 2145	대전서대사동247번지0호				0	드래프트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8. 건설가계정

○ 전철가계정은 연도별 자본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말잔액을 기입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간 증가액이 연간 감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연간증감란에 △표시를 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1) 건설가계정 연간증가						(2) 건설가계정 연간감소						(3) 연간증감 [(1)-(2)]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백	십	천
5	2	0	0	0	0	2	2	0	0	0	0	3	0	0	0	0	0

9. 조사표 작성근거

○ 제6항 원재료 및 연료재고액과 제10항 유형고정자산의 작성근거를 구분하여 해당()안에 O표 한다.
○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장부는 복식부기를 말한다.

(1) 원재료 및 연료 재고액	(2) 유 형 고 정 자 산
① 장 부 (0)	① 장 부 (0)
② 일 부 기 역 ()	② 일 부 추 정 ()
③ 기 역 ()	③ 추 정 ()

10. 유형고정자산

- 자산분류중 「3. 건물부속설비」는 장부상 구분이 곤란할 경우 「2. 건물」에 포함한다.
- (2) 만의신품에는 모든 수입품(외국으로부터 직접수입한 중고수입품포함)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에서 연간처분액이 연간취득액보다 많은경우 「△」표출하고 그 차액을 기입한다.
-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에서는 1965년 1월 1일 이후 최근의 재평가 결과를 기입한다.
- 1973년 및 1968년말 현재 총평가액은 연말현재로 기입하되 각성이 곤란할 경우 동회기연도말 장부가액을 기입한다.
- 해당 사항이 없는 단에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자산분류	(1) 1973년말 현재총평가액		(2) 1973년 유형고정자산 취득액 및 처분액												(3) 연도별 순자산 취득액 (연간취득액-연간처분액)				(4) 1968년말 현재총평가액	(5) 1966년 자산재평가시 유형고정자산														
			연간취득액				연간처분액				연간감각상각액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재평가직전 기말잔고		재평가직후 기말잔고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신	중고품		
1. 토 지	8,970 평	XXXXXX	2,520 평	XXXXXX	1,320 평	XXXXXX					520 평	670 평	180 평	100 평					5920 평	XXXXXX	XXXXXX	XXXXXX												
2. 건 물 (주거·비주거용)	1,7940	XXXXXX	5040	XXXXXX	2640	XXXXXX					1040	1340	1560	200					12840	9020	10970													
①철근석조 및 철골조	32000	12000	5000	8000	2000	900					2000	1000	900	800					20000	18270	19290													
②토벽무조 및 목골조																																		
3. 건물부속 설비	12210	2050	1800	100							2100	1400	2220	1200					6230	5620	5980													
4. 구 축 물	1520	1240	800	50							520	150	600	200					5241	4800	4970													
①자갈건설 및 시설	1000	800	900	30							220	600	300	100					5241	4800	4970													
②교통시설 및 기타	520	440	100	20							300	150	300	100																				
5. 기계및장치	97740										7523	7650	2000	5000					85230	79654	81223													
6. 공구·기구 및 비품																																		
7. 차량 및 운반구																																		
8. 선 박																																		
합 계	167010	15290	10040	10600	4640	1050					13183	12140	7280	7400					129541	117364	122433													

적요: 유고사유, 기타 참고 사항등을 기입한다. (12)
 건설가계정증거는 무엇을하여 신규건설을 위하여 5억 원이 들었으며 장조는 기계설비임수로 해당계정으로 처리 되었음.

① 작성년월일	② 응답자소속	③ 응답자 성명	④ 조사원 성명	⑤ 지도원 성명
1974년 4월 9일	총무. 파 (전화 63.4321)	김삿갓®	손오음®	김노숙®

1973년

지정통계 제 6 호

광 공업센서스조사표 (Ⅲ)

(영 세 사 업 체 용)

통계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사표에 기재되는 내용은 통계목적에 한 사 용하며 그 비밀은 절대 보장됩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조사구번호	조사표번호	사업체번호	산업분류	조업월수
2400202	21	*	*	*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명과 소재지만 기입한다.

사업체명 : **동 명 사**

대표자명 : **홍 길 등**

전화번호 : **2. 3123**

서울특별시 구 동 가
부산직할시 **대진 ① 동정 ② 136 ③ 20 호**
충청남도 **공 음 면 리(6통3번)**

2. 주요생산품명 및 생산공정

(1) 주요생산품명 : **부 르 크**

(2) 생산 공 정 : **세팅로라-배합-성형-건조-부르크**

3. 연간조업월수 : 조업월이라 함은 월 15일이상 작업한 달을 말한다.

(1) 조업월수 : **(10)** 개월

(2) 해당란에 표 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	○	○	○	○	○

4. 종업원수 및 월평균 급여액

○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는 주당 24시간 이상 종사하나 일정한 급여를 받지않는자를 말한다.
○ 1973. 12. 31현재의 연말종업원수와 1973년 조업기간중 평균종업원수의 해당숫자에 표한다.
○ 월평균 급여액에는 현물로 지급한 것도 지급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포함한다.

구 분	연 말 종 업 원 수 (1973. 12. 31 현재)				조업기간중 평균 종업원수 (1973. 1. 1 ~ 12. 31)				월평균 급여액				
	0	1	2	3	4	0	1	2	3	4	십만	만	천원
(1) 사업주 및 무급 가족종사자	0	①	2	3	4	0	①	2	3	4	X	X	X
(2) 유급 종업원	0	1	2	③	4	0	1	2	③	4		9	0
합 계	1	2	3	④		1	2	3	④			9	0

5. 완제품의 월평균 판매량 및 판매액

○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중에서 조업기간중 월평균 판매액이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타 광공업 사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제조한 완제품은 제6항에 기입한다.
○ 품목명 및 수량 단위는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완 제 품 명	☆	단 위	월 평 균 판 매 량	월평균 판매액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3699200	부 르 크		1000개	4					200
②	3699201	벽 들		1000개	40					200
③	3691203	기 구		1000개	9					100
④										
합 계					51					500

6. 수탁제조 월평균 생산량 및 수입액

○ 타 광공업 사업체로 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수탁제조한 완제품 중에서 수탁제조 수입액(가공임)이 큰것부터 차례로 기입한다.
○ 타 산업부문(무역업, 도매업등)으로 부터의 수탁제조인 경우에는 직접 원재료를 구입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5항에 기입한다.
○ 품목명 및 수량단위는 별책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다.

일련번호	품목분류번호	완 제 품 명	☆	단 위	월 평 균 생산 량	월평균 수입액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3699200	부 르 크		1000개	2					80
②	3699201	벽 들		1000개	6					30
③	3691203	기 구		1000개	1					20
④										
합 계					9					130

7. 월평균 주요 생산비

○ 제5항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조업기간중 사용한 월평균 생산비율 구분하여 기입한다.
○ 기타란에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월평균 지불액을 기입하며 가구사용분이 생산활동용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구분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

구 분	천만	백만	십만	만	천원
(1) 원 재료 비 : 제5항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비				4	0
(2) 연 료 비 : 제5항의 완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한 석탄류, 유류 및 기타 연료비				4	0
(3) 기 타 :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월평균 지불액				1	0
합 계				4	5

8. 유형고정자산

○ 연말종액란은 1973. 12. 31현재의 금액으로, 기타의 란에는 1973년간의 금액으로 기입한다.
○ 외국으로부터 직접수입한 중요품은 신규취득액에 포함한다.
○ 연간 처분액에는 매각, 양도, 재해등에 의한 처분 및 감소액을 기입한다.

구 분	(1) 연말종액					(2) 연간신규취득액					(3) 연간중고취득액					(4) 연간처분액								
	천원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원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원	백만	십만	만	천원	천원	백만	십만	만	천원				
① 토지·건물 및 구축물		1	2	0	0				3	0	0				4	0	0				5	0	0	
② 기계·기구 및 장치				9	0	0				4	0	0				1	0	0				2	0	0
③ 차량·선박 및 운반구																								
합 계		2	1	0	0				7	0	0				5	0	0				7	0	0	

적 요 : 구분이 힘든 품목명, 사업체 사용단위, 유고사유, 기타 참고사항등을 기입한다.
 ① 사업체 사용단위는 개, 장이었음. ② 1월과 12월은 추외로 추함. ③ 판매액과 20만원의 단위로
 5만원이었음. ④ 5월과 6월, 9월 10월이 가장 경기가 좋았음.

① 작성년월일	② 응답자연락처	③ 응답자성명	④ 조사원성명	⑤ 지도원성명
1974년 4월 5일 (전화번호. 2104)		김 샷 샷 ⑩	손 오 봉 ⑩	박 권 수 ⑩

주(註) : ☆ 란은 기입하지 않는다.